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III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유민호 임동훈 김민혁 박승호 이석원

정금연 김용오 김성은 김다운 이미선

서창희 김지수 임제웅 정한솔 오규환

정성영 김유진 안승재 허아름 김민석

권인오 현서린 박은형 우형규 문소희 예산분석관

지원 | 정진아 행정실무관

허성혁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VIII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I. 개 요 / 1

1.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3
가. 현 황	3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6
2.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0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0
(1) 현 황	10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11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24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47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 55

1. 국회운영위원회	57
가. 현 황	57
2. 법제사법위원회	58
가. 현 황	5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58
(1) 공공요금 부족을 이유로 한 이·전용(법무부)	58
(2)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의 발생(법무부)	61



CONTENTS

3. 정무위원회	63
가. 현 황	6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3
(1)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용 문제 개선(국가보훈부)	63
(2) 청년적금상품 사업 소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금융위원회)	65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7
가. 현 황	6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8
(1)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관행(재정경제부)	68
(2)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등(기획예산처)	70
(3)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국가데이터처)	75
(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비율 제고 및 청년층 부담 완화 노력 필요(국세청)	76
(5)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관세청)	78
5. 교육위원회	81
가. 현 황	8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미흡(교육부)	81
(2)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대규모 이월(교육부)	83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6
가. 현 황	86

CONTENTS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6
(1)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 구축사업(R&D)의 실행 부진 및 출연금 이월 (우주항공청)	86
7. 외교통일위원회	89
가. 현 황	89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9
(1) 설문조사 예산 재검토 및 수행 불가능 국가 대상 보완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89
(2)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통일부)	91
8. 국방위원회	93
가. 현 황	9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4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초과집행 지속문제(국방부)	94
(2) 잠복결핵위탁검사 집행단가 불용 지속문제(병무청)	95
9. 행정안전위원회	97
가. 현 황	9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8
(1) 제주 4·3 피해보상 연례적인 실행부진(행정안전부)	98
(2)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유입 적정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검토 필요(소방청)	100
(3)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미흡(인사혁신처)	102

CONTENTS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6
가. 현 황	10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7
(1) 세입 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07
(2)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행부진 문제(문화체육관광부)	109
(3) 국가유산보호기금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국가유산청)	111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3
가. 현 황	11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4
(1)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례적인 공사지연 문제(농림축산식품부)	114
(2)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의 집행 저조 문제(농림축산식품부)	116
(3)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실행 저조 문제(농림축산식품부)	118
(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산림청) ·	120
(5)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의 보조금 법령에 부합한 집행 필요(해양수산부)	122
(6)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의 수검실적 저조 문제(해양수산부)	123
(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준수 노력 필요(해양경찰청)	125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7
가. 현 황	12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7
(1)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의 참여자 모집전략 재검토 필요 (산업통상부)	127



CONTENTS

(2) 특화단지 지원사업 다년도 예산지원 방안 마련 필요(산업통상부)	130
(3)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등(지식재산처)	132
(4)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35
 13. 보건복지위원회	139
가. 현 황	139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40
(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의 법정 지원을 미준수 문제(보건복지부)	140
(2) 노인일자리 사업 대기 수요 해소 및 전담인력 처우개선 미흡(보건복지부)	143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연 및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미흡(보건복지부)	144
(4)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145
(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권역별 추진 지연 개선 필요(질병관리청)	149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54
가. 현 황	15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55
(1)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기후에너지환경부)	155
(2)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 임의 추진 문제(기후에너지환경부)	157
(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과다 문제(기후에너지환경부)	161
(4)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고용노동부)	165
(5)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168
(6) 관측장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기상청)	170



CONTENTS

15. 국토교통위원회	172
가. 현 황	17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73
(1)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장기 공실 문제 미해소(국토교통부)	173
(2)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민자사업자와의 분쟁 방지방안 마련 필요 등 (국토교통부)	174
16. 성평등가족위원회	176
가. 현 황	17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76
(1)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 필요(성평등가족부)	176
(2) 과징금 수납률 저조 문제(성평등가족부)	182
17. 위원회 공통	187
가. 현 황	187

[부 록] /191



I. 개 요

가. 현 황

국회는 2025년 11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¹⁾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와 16건의 부대의견²⁾을 채택하였다.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에 따른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는 없었다.

시정요구제도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³⁾을 통해 도입되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재정 통제 절차이다. 그러나 결산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회가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제도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시정요구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결산 이후의 후속 관리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예산 집행상의 반복적인 오류와 비효율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전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국회법」 개정(법률 제6855호, 2003.2.4., 일부개정)에 따라 제84조제2항 후단 신설

시정요구의 내용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변상 요구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도개선, 업무절차의 보완, 정책 운영 방식의 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서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 변상과 징계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시정요구에 복수의 유형이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및 조치대상 기관]

유형	적용기준	조치대상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이드」, 2025.7.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결산	-	-	147	432	1,479	(91)	1,967
예비비	-	-	1	5	14	-	20
합계	-	-	148	437	1,493	(91)	1,987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3.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44건)와 부대의견(3건)은 별도로 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5.11.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를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437건, 시정 14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91건이 복수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최근 5개 회계연도의 시정요구 건수 추이를 보면, 2020회계연도 1,881건에서 2021회계연도 1,416건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22회계연도 1,916건, 2023회계연도 2,319건으로 증가한 후 2024회계연도 1,987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연도별 국회 결산 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시정요구	1,881	1,416	1,916	2,319	1,987
	부대의견	21	21	26	34	16
	감사요구	4	-	1	-	-
결산	시정요구	1,846	1,394	1,889	2,293	1,967
	부대의견	21	21	26	34	16
	감사요구	4	-	1	-	-
예비비	시정요구	35	22	27	26	20

주: 정보위원회 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개 회계연도간 변상은 0건, 징계는 5건으로 그 건수가 미미하고, 제도개선이 6,16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20	-	2	220	534	1,197	(72)	1,881
2021	-	-	79	457	944	(64)	1,416
2022	-	2	213	612	1,198	(109)	1,916
2023	-	1	248	808	1,330	(68)	2,319
2024	-	-	148	437	1,493	(91)	1,987
합계	-	5	908	2,848	6,162	(404)	9,519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3. 정보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또는 2023회계연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305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일부(70건)는 최근 3년 연속 시정요구가 제기된 사례였다.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40	193	227	297	305
전체 시정요구	1,881	1,416	1,916	2,319	1,987
반복 시정요구 비율	12.8	13.6	11.8	12.8	15.3

주: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란, 해당 회계연도의 시정요구 사항 중 직전 2개 회계연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된 전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대체로 정부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행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시정요구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경우, 정부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건제시형 부대의견’⁴⁾을 통해 집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시정요구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3개 회계연도(2022~2024년) 연속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었거나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4) 김세진 외(2009)의 「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는 조건제시형 부대의견의 예로, ① 외교통상부에 대해 “재미동포연구소 지원사업은 UC 리버사이드 대학과 MOU 체결 이후 집행하라”는 조건을 부여한 사례와, ②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에 대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3개년(2022~2024회계연도) 동안 모두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채 납처분절차 도입, 직상수급인 변제책임 부과, 고액채권집중회수팀 신설 운영, 변제금 미납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등을 통해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 하였다. 그러나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 악화 및 적립금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 병원에 예산을 교부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바, 2025회계연도에 이월 최소화를 위해 월별 실집행 실적 점검, 주기적인 내역사업 관리 등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를 실시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 예산액 기준 실집행률이 39.1%로 나타나 2022년 58.5%, 2023년 43.2%, 2024년 54.4%에 비해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공실 물량 매각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한 계획적인 매입을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지역별·유형별 수요와 공급 현황, 공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전체 임대주택 재고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재고 비율이 상승하는 등 미임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건설 및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전용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으며, 이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6년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집행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전용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고속도로건설 사업에서 3,662억원, 국도건설 사업에서 3,553억원의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사실상 자체 수입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에 의존하여 장려금 지급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동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국회 시정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2025년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소관 부처 이관 및 재원 조달 방안 개선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의 예산을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부족액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지원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를 매년 국회로부터 지적받았으나, 2025년에도 이전과 동일한 규모(23억 6,500만원)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대규모 이·전용(41억 9,000만원)을 통해 부족액을 충당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연부율을 1년차 50%, 2년차 50%에서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으로 조정하였으며, 2025년 공모사업 평가 시 실집행 실적을 반영하고 격월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내역사업의 경우 '26년부터 사업기간을 1년차에서 2년차로 확대하고, 연부율을 1년차 40%, 2년차 60%로 조정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년에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내역사업에서 예산 60억원 중 17억 2,9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2024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중 2025회계연도 조치가 미흡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 여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2022	2023	2024	
고용노동부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	○	○	채불임금 회수율이 31.9%에서 30.9%, 30.0%, 29.7%로 오히려 악화
교육부	실집행률 제고 필요	○	○	○	예산액 1,170억 5,700만원 중 457억 7,500만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39.1%) 저조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 공실 문제 개선	○	○	○	다가구매입임대 전체 재고 중 6개월 이상 미임대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고속도로건설, 일반국도 건설 단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전용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	○	○	고속도로건설 사업에서 3,662억원, 국도건설 사업에서 3,553억원의 이·전용 등이 발생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	저축장려금 일반회계 전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국회의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국가보훈부	예산추계 정확성 제고	○	○	○	매년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 부족액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예산 규모 내에서 집행함에 따라 미지급금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보조금 관리 강화 및 실 집행률 제고 필요	○	○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내역 사업 예산 60억원 중 17억 2,900만원 이월 발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 현 황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6년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5월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1,987건에 대하여 1,603건(80.7%)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84건(19.3%)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2020회계연도에 18.4%에서 2021회계연도 17.0%, 2022회계연도 17.4%로 하락하였다가 2023회계연도에 20.0%로 크게 상승하였다. 2024회계연도에는 19.3%로 전년대비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20회계연도 결산	1,881	1,534	347	18.4
2021회계연도 결산	1,416	1,175	241	17.0
2022회계연도 결산	1,916	1,582	334	17.4
2023회계연도 결산	2,319	1,855	464	20.0
2024회계연도 결산	1,987	1,603	384	19.3

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⁵⁾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조치 완료로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형식적 보고에 중점을 두는 관행, 집행 실태와 동떨어진 예산 편성 및 운영, 제도 개선의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조치결과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최소한의 조치만으로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⁶⁾의 최근 3년간 발생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은 2022년 213억 9,700만원, 2023년 152억원, 2024년 137억 6,8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이월액은 2022년 1억 4,934만원(14건), 2023년 3,566만원(9건), 2024년 1억 7,053만원(2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미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3,053억원(1차 2,431억원, 2차 622억원)을 배정받아 즉시 집행하였다고 하면서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국가배상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배상금의 구체적인 추계를 통하여 본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편성하고,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⁷⁾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3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이 중 27건을 비공개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및 비공개 관행이 지적되었다. 국회는 재

6) 자세한 내용은 p.61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p.68 참조

정경제부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재정경제부는 연구용역 예산 배정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용역 결과 공개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92%로 전년(86.5%) 대비 증가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 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연동 방식으로 세입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인 한편, 최근 세수체계 오차로 변동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불용처리로 재정운용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던 바가 있어,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세제 개편과 연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교육세분을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교육 분야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교부금 불용처리 시 사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⁹⁾하여 세수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을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교육 분야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구조가 2024, 2025회계연도에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부에서 보고한 2026년도 제도개선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자세한 내용은 p.81 참조

9)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소방청¹⁰⁾의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데이터 유통·거래 및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위탁 운영 과업 미흡, 유상거래 규모 감소, 데이터 유통 증가율 저조 등이 지적되었다. 국회는 소방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유통 활성화, 위탁운영 지속가능성 강화, 플랫폼 실질적 활용성 개선에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소방청은 데이터 표준·품질 체계 수립,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25.6.13.),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322건)가 무상 데이터 등록 건수(641건)에 비해 여전히 적고,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 대비 무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 비율이 2024년 1.81배에서 2025년 1.99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2025년에 신규로 발굴한 데이터 중 소방관련 카테고리(소방안전·소방산업·화재안전성능 등)는 274건(39.2%)이나, 언론보도 및 소비분석 카테고리가 425건(60.8%)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해당 카테고리에는 도박·비리사건·지식범죄·카드결제 데이터 등 소방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데이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분야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품질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¹¹⁾의 수탁금 잉여금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2024년 결산 기준 누적된 잉여금 규모가 8,621억원에 달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는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주의)하고,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제도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39억원 증가된 1,701억원을 반환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반환 예산 증액 요구 및 신속 반환을 추진하고, 2026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여 수탁금 잉여액 이자수익의 반환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10) 자세한 내용은 p.100 참조

11) 자세한 내용은 p.102 참조

그러나 2025년에도 결산 기준 누적 잉여금이 8,852억원 수준에 이르고, 2025년 산정액 대비 국가기관은 812억원, 지방자치단체는 3,657억원이 각각 과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중기사업계획상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반환금을 차질 없이 편성·집행함으로써 누적 잉여금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¹²⁾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녹색자금은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되고 있어, 그 수입 및 지출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및 국회 재정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회는 녹색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사업비 집행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전산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여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녹색자금의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모든 집행내역을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검증 및 정산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녹색자금은 자금 집행 이후의 소관 상임위 사후 보고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국회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고,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 재정인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 또한 다른 재정 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산림청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자금을 국가 재정 외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업통상부¹³⁾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은 2024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모집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한편 참여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였고, 국회는 구체적인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참여자 모집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12) 자세한 내용은 p.120 참조

13) 자세한 내용은 p.127 참조

합동으로 R&D 특정평가를 추진하였고,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515억, 4개 부처 합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참여자 모집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희귀·중증질환자 모집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산업통상부는 참여자 모집 지연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¹⁴⁾의 대지급금 지급액이 2022년 5,368억 6,400만원에서 2024년 7,242억 7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회수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회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라 회수율 상향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 직상수급인 변제책임 부과, 고액채권집중회수팀 신설 운영, 변제금 미납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등을 통해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매년 감소하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지급금의 회수율은 담보 상태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¹⁵⁾의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따른 공급량이 2024년말 기준 181,938호이고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재고는 5,154호로 전체재고 대비 2.8% 정도로 나타남에 따라 국회는 다가구매입임대의 장기공실 물량 매각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장기공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한 계획적인 매입을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유형별 수요와 공급현황, 공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14) 자세한 내용은 p.168 참조

15) 자세한 내용은 p.173 참조

그러나 2025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따른 장기미임대 물량 및 전체 재고량 대비 비율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장기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임대 상태에 있는 매입주택 재고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산 조정을 통해 시정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반복적인 이·전용, 과소 추계 등 근본적인 편성·집행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¹⁶⁾는 2024회계연도에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항목의 경비를 과다 전용하였는데, 2024년도에 예산액의 14.1%인 41억 2,1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경비로부터 전용하였다. 국회는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편성함으로써, 필수 경비 부족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검찰 전체 공공요금을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 증액하는 등 모자란 예산은 증액하고 남는 예산은 감액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고, 공공요금은 검찰청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은 물론,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를 신청하는 등 대규모의 이·전용을 지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에도 다수의 사업으로부터 공공요금의 부족을 이유로 36억 9,700만원을 자체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보훈부¹⁷⁾의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과다한 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용 규모는 2023년의 경우 보훈병원 393억 8,500만원, 위탁병원 79억 4,600만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보훈병원 553억 1,200만원, 위탁병원 368억 1,9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국회의 국가보훈부로 하여금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

16) 자세한 내용은 p.58 참조

17) 자세한 내용은 p.63 참조

적 이용 문제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는 보상금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진료비 부족분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진료비 예산을 2025년 본예산 대비 증액하였음을 근거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집행 현황을 보면, 제2회 추경을 통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훈병원 760억 8,900만원, 위탁병원 377억 2,900만원의 미지급금을 발생하였고, 해당 미지급금은 202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교부한 보조금을 통해 정산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6년 진료비 보전금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처럼 진료비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2026년에도 이용을 통해 충당하거나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 보고한 것은 진료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¹⁸⁾의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매년 기여금 매칭 대상이 되는 가입 유지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편성한 출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교부함에 따라 기관에 유보된 이월액을 발생시킨 문제가 있었다. 국회는 신사업(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가입실적이 더욱 둔화될 것을 감안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내 유보 현황과 가입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것 등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2025년말 상품 신규가입 중단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분만을 편성한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편성한 청년도약계좌 2026년 기여금 지급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청년미래적금을 출시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¹⁹⁾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회

18) 자세한 내용은 p.65 참조

19) 자세한 내용은 p.140 참조

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한도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1.5~12.1%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법정 기준(14%)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제시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재정당국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5년 대비 1,100억원 증액된 12.7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6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의 경우 대체로 관련 법령상 한도액인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지원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일반회계 지원분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1.9% 수준에 그쳐 법정지원율(14%)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부진과 이월·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통일부²⁰⁾의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1억 5,4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되는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고, 국회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향후 대북 소통채널 복구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다자협력사업 등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모색해 나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20) 자세한 내용은 p.91 참조

그러나 2025년에도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집행률 54.2%)하는 데 그쳤으므로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국내 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적정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발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²¹⁾의 제주 4·3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불용액 합계가 1,500억원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4년 집행률도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러한 실집행부진이 사실 관계 조사에 필요한 심사 인력이 불충분하여 보상금 심의가 지연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인력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등 보상금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주 실무위원회의 심사인력(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4명)을 보강하였으며(기존 2명→6명), 이후 보상금 심의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액 2,418억 7,700만원 중 418억 2,900만원을 이용 감액하고 1,945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보상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해 연차별 지급계획이 당초 2026년 완료에서 2028년 완료로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실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급속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업무처리 속도를 고려하여 연내 지급 가능인원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²²⁾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집행률은 평균 97.2%로 교부는 원활히 이루어졌으나, 지자체의 평균 실집행률은 33.9%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례적 이월과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95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센터 신규 선정 전 현장실사하여 지자체 사업준비성을 확인(‘25. 9

21) 자세한 내용은 p.98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p.109 참조

월)하였으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미준수 지자체에 공모 평가시 감점을 부여(25. 10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년도 사업시행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3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70%를 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도 지속적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²³⁾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사업비를 편성하며,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률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26년에는 공정률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 완료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4년 11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착수되어 2025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설계기간이 33개월 순연('23.5.~'26.1.)되면서 착공 예정일이 지연되고, 총사업비가 3,124억원에서 4,826억원으로 1,702억원(54.5%) 증액되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여 단계 및 사업장별로 필수 행정절차의 완료 시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²⁴⁾의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내역사업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저탄소영농활동에 필요한 저메탄사료가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23) 자세한 내용은 p.114 참조

24) 자세한 내용은 p.116 참조

내 출시되지 못하면서 사업의 기본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집행률은 0.5%에 불과하고, 젓소의 저메탄사료 급이 실적은 전무하였다. 국회는 집행 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기본여건 미비로 인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 개편을 통해 분뇨처리 방식 개선(한·육우, 젓소)을 신규 추가하고, 친환경 사료 전환 축종을 확대(돼지+한·육우, 산란계)하였으며, 이행 편의성 도모(증빙 월별→분기)와 함께 2026년 지원단가 상향(저메탄사료 2.5만원→5.5만원/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조치를 완료('26.1.)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시범사업은 2025년에도 당초 계획액 95억 2,700만원 대비 실집행액은 17억 700만원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행행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²⁵⁾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119억 4,000만원 중 16억 1,700만원이 실집행(16.2%)되었다. 국회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를 하고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효율화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실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년에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7%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보조금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

25) 자세한 내용은 p.122 참조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²⁶⁾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2024년 예산 3,700억 4,100만 원이 전액집행되었으나, 지자체로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을 보면, 교부현액 5,078억 800만원 중 3,209억 9,100만원만 실집행되었고 1,818억 8,900만원은 이월, 49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 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율편성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후상수도가 과소투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관리 및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였고, 사업조건을 유연·개방적으로 완화하여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수도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제 집행률은 2024년 70.3%에서 2025년 63.2%로 낮아지는 등 집행부진 문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회 시정요구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²⁷⁾의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은 2024년 예산 288억 3,200만원 중 135억 400만원(46.8%)만 집행되었고, 특히 외국인력특화훈련은 2024년 목표인원 4,000명 중 실제 지원인원은 755명(18.9%)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외국인력 특화훈련의 목표 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집행 실적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을 방지할 것과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정교육 이후 외국인력 특화훈련까지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연계를 추진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심사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주말 훈련 시 수당을 지원하고, 한국어(문

26) 자세한 내용은 p.155 참조

27) 자세한 내용은 p.165 참조

화)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2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5년도에도 외국인력특화훈련을 목표인원 대비 19.4%만 훈련에 참여하는 등 집행 실적 저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한도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외국인력 특화훈련 수요를 재점검하여 목표인원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훈련 참여 대상 확대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조치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확인되는 이유는 정부가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획 수립, 지침 전달 등 형식적 절차 수행만으로 판단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조치완료’ 판단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구체적인 이행 목표와 성과 지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후 조치결과 및 후속 보고 시 해당 지표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앙관서의 담당자는 조치계획 단계에서 조치 완료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 또는 정성 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후 성과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조치완료’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성과 기반의 조치평가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형식적 보고에 그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시정요구의 실질적 이행과 정책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중 384건(2025년 4월 기준)이 여전히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치미완료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신속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가 제출된 이후에도, 최종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법」 제84조제2항28)에 의하면,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치결과 보고의 구체적인 시기는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정부는 ① 결산 심의 완료 후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차로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② 익년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가재정법」²⁹⁾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6년 1월, 그리고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는 같은 해 5월에 제출되었다.

28)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국회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조치결과보고 일자		조치 결과 ¹⁾			
	조치결과보고	후속 조치결과보고	시정요구사항 (A)	조치완료	조치중 (B)	조치미완료율 (B/A)
2020	2022년 3월	2022년 5월	1,881	1,534	347	18.4
2021	2023년 2월	2023년 5월	1,416	1,175	241	17.0
2022	2024년 2월	2024년 5월	1,916	1,582	334	17.4
2023	2025년 1월	2025년 5월	2,319	1,855	464	20.0
2024	2026년 1월	2026년 5월	1,987	1,603	384	19.3

주: 1) 후속 조치결과보고 기준 조치결과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하지만 후속 조치결과 보고 이후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조치중’으로 분류된 사안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당시에 655건의 시정요구가 ‘조치중’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2026년 5월 제출된 후속 보고에서는 이 중 271건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완료된 384건이 2026년 5월 이후에도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이행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참고로 2020~2024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미완료율은 15~20% 수준이다.

이처럼 이행 점검 체계가 미비한 상황은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시정요구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행 여부를 ‘조치중’으로 반복 보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시정요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보고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조치 이행 여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익년도 5월까지 제출된 미완료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예산안 심사시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³⁰⁾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27, 2021.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726, 2022.2.10.)

[21대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구분	윤영덕 의원안(2021.4.6.)	배준영 의원안(2022.2.10.)
정기 보고 의무화	시정요구사항 처리계획·결과: 당해연도 12.31까지 보고 조치미완료사항: 익년도 5.31까지 처리·보고	
미완료 사항 후속 조치	익년도 5.31까지 미완료 시, 그로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처리 상황·최종결과 지속 보고 의무화	익년도 5.31까지 미조치·미흡 시 ① 해당 사업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하여 예산 조정 가능 ② 위원회 의결로 주무부장관 소명요구 가능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이행 단계를 ‘계획-착수-진행-완료’ 등으로 구분하고, 국회 예결산정보시스템 등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 시정요구 이행 관리체계 및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이 예산 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4월 기준,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 중 51건에 대해 예산 증액 또는 사업의 신설·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예산 조정과 직결되는 시정요구의 경우, 결산과 예산 심의 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 조건부 편성이나 감액 등을 통해 제도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일 사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적절한 환류 조치를 마련하는 등 후속 관리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사항 중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법무부	○ 법무부는 법전원 기출문제 제출을 독려하여 시험문제를 다양화하고, CBT 도입에 따라 불용된 채점보조 인력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법무부는 (중략) 시험관리의 전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 CBT 도입에 따라 불용된 인건비는 CBT 도입 초기인 제도 정착 상황(수기 시험 병행)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정 하였음 - '26년 예산은 일용임금 79백만 원('25년: 134백만 원), 고용부담금 16백만 원('25년: 2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총 6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해당 과목의 실집행 역량에 부합하도록 전액 집행될 예정 ○ CBT 체제 확대를 위한 전자법전(e-법전)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노후 전산시설 이중화 및 온라인백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 시험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
	○ 고령·질병 수용자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료 관련 예산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법무부는 의무관 보수 현실화, 전공의 조기확보 등 의무관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할 것	○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초로 한 예산 산정 및 진료비, 입원비, 의약품비 등 전반적 상승에 따른 예약금 증액 편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24년 의무관 전체 정원을 일반임기제 의무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직 연봉특례 제도를 신설, 연봉 상한률 200% 적용한 결과, '23년 의무관 현원 83명(결원율 29.7%)에서 '25년 92명(결원율 20%)으로 9명의 의무관을 충원하였음. 향후 의무관 연봉 상한률 250% 이상 적용하여 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채용채널 다양화 등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음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법무부	○ 무관액을 제외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의 개념을 교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명확히 하여 위탁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안을 마련	○ 「위탁계약서」 및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무관액)'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교도행정 예산'의 구체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겠음. 다만 이를 위해 절차상 계약상대방인 재단법인 아가페와의 협의를 필요하므로 향후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음 * 1차 업무협의: '26년 6월 예정
	○ 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 조치내용: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 중 위기상황자의 대상자 수 산출 등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계를 산출할 예정임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 편성 시 위기상황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26년 12월 2일
대법원	○ 광역면접교섭 센터 설치 사업의 일반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예산 병행 집행 방식 개선 필요	○ 면접교섭센터 설치비용: 317백만원 → 0(순감)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국회 시정요구사항(일반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예산 병행 집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 계획
	○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개선 필요	○ 이미 기록된 외국인 가족정보 색인화 위하여 2027년도 자료정비사업 증액하여 예산안 요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답변서 및 결정서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음 - 심판청구 전자접수 및 결정서 및 관계서류의 전자송달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제출('26.4.)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부설연구기관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조직 설립의 입법례처럼 부설기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육아정책연구소는 출범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의 부설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기관장 임명부터 조직 및 예산 등의 관리 감독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실제 기관 운영을 반영하여 향후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 및 대상자 분류별 지원 예산 인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을 추산할 것(제도개선)	○ 고령화에 따른 민간요양시설 지원인원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지원 인원 및 단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출하고,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 국가보훈부는 누적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의 교통복지카드 사업은 전국호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판단 실패를 보여줬고, 그 결과 재정 비효율성과 미지급금 누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누적 및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개선하고, 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향후 국고 부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제도개선)	○ '23~'25년 시내버스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금을 포함한 적정금액이 '2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 '26년 시내버스 예산 11,047백만원 증액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 국가보훈부는 편의성과 영예성 증진이라는 해당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살리되, 예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절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 업무별 예산 구분 편성·집행 필요	○ 2027년 예산 편성 시 신고처리 및 점검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할 예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와 연계되어 있는 출연금 규모 등의 주요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것	○ 2027년 예산 요구서 작성 시 수납실적 평균금액 외에도 출연금 규모 등 주요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 제고 - '27년 단기 예산안 제출 예정 * 중장기 예산안은 산출식 반영하여 기재출																					
기획예산처	○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불용 및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그간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하여 편성 중이며, 향후에는 “전년도 예산 규모 기준”이 아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예정 * 최근 5개년 평균 집행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예산규모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th>예산액</th><th>집행</th></tr> </thead> <tbody> <tr> <td>2021</td><td>312</td><td>312</td></tr> <tr> <td>2022</td><td>296</td><td>296</td></tr> <tr> <td>2023</td><td>281</td><td>55</td></tr> <tr> <td>2024</td><td>274</td><td>121</td></tr> <tr> <td>2025</td><td>220</td><td>239</td></tr> <tr> <td>평균</td><td>-</td><td>200.8</td></tr> </tbody> </table>	연도	예산액	집행	2021	312	312	2022	296	296	2023	281	55	2024	274	121	2025	220	239	평균	-	200.8
연도	예산액	집행																					
2021	312	312																					
2022	296	296																					
2023	281	55																					
2024	274	121																					
2025	220	239																					
평균	-	200.8																					
국가 데이터처	○ 국가데이터처는 태블릿PC 취득 시 렌탈·리스 등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태블릿PC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타 부처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태블릿PC의 구매/임차 방식의 가격비교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예산 수립시 사후 활용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겠음 - 다음주기(2030) 태블릿 PC 활용 검토시에는 다수의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매와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가 데이터처		임차에 관한 충분한 견적서를 확보 및 비교·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노력하겠음 - 또한 관련 예산(안) 수립시 태블릿PC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처내·외 활용 수요 파악 및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타부처 관리전환을 최소화하겠음 * 조치예정일: 2028년 6월 30일
	○ 국가데이터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반수용비의 직접 집행방식 또는 지자체 예산 교부를 위한 타 비목으로 변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9년에 실시할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재정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겠음 * 조치예정일: 2028년 12월 31일
국세청	○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감치제도의 적극 운영 등 체납자 제재를 강화하며, AI기술을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체납액 징수 제도를 개선·확대 하여 체납규모 축소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 자발적 체납 징수 동기를 부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25.6월)하여 시행('26.3월 지급)중으로 조치완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을 인하(5천만원 → 3천만원)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재경부에 제출('26.2월)하여 조치완료 - 감치 검토 대상을 확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반기에도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26.3월) 하여 감치 신청하는 등 적극 확대 운영 중으로 조치 완료 - 체납액 일부 납부시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납부유인책 마련을 통한 명단 공개 실효성 강화('26.2월 개정 법령 시행)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교육부	○ 교육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연금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제6차 연금재정장기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사학연금 재정재계산 시 장기 재정추계 결과('25.12.)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검토 추진 - '폐교 등으로 퇴직한 교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 - 현재 관련 2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 계류중으로 조속한 빠른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조 필요 * ① (문정복의원실 대표발의) : 퇴직 즉시 3년간 퇴직연금 지급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정지 ② (김문수의원실 대표발의) : 폐교연금을 폐지하여 폐교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연금 개시연령(65세)부터 수령 ○ 제6차 재정재계산 시,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변수 현행화를 통해 주요 가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으며, 대학병원 가입자 수 추계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퇴직률을 구분하여 산출·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재정전망이 가능하도록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제5차 재정재계산 (2020)</th> <th>제6차 재정재계산 (2025)</th> </tr> </thead> <tbody> <tr> <td>기금 최고시점</td> <td>2028년</td> <td>2027년(-1년)</td> </tr> <tr> <td>기금 최고액</td> <td>25.1조원</td> <td>31.6조원 (+6.5조원)</td> </tr> <tr> <td>재정적자 시점</td> <td>2029년</td> <td>2028년(-1년)</td> </tr> <tr> <td>기금고갈 시점</td> <td>2049년</td> <td>2047년(-2년)</td> </tr> </tbody> </table>	구분	제5차 재정재계산 (2020)	제6차 재정재계산 (2025)	기금 최고시점	2028년	2027년(-1년)	기금 최고액	25.1조원	31.6조원 (+6.5조원)	재정적자 시점	2029년	2028년(-1년)	기금고갈 시점	2049년	2047년(-2년)
	구분	제5차 재정재계산 (2020)	제6차 재정재계산 (2025)														
기금 최고시점	2028년	2027년(-1년)															
기금 최고액	25.1조원	31.6조원 (+6.5조원)															
재정적자 시점	2029년	2028년(-1년)															
기금고갈 시점	2049년	2047년(-2년)															
○ 교육부는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2회 이상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할 것	○ 2025년 보조금 2회 분할 교부 완료(4월, 9월) ○ 전문기관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중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교육부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취지에 반하여 교부금을 미교부·불용 처리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및 노력을 기울일 것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정산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고려하여 교부금의 불용 등 회계연도 내의 감액에 신중을 기할 것	○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9.30., 기재위 수정가결)은, -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예산 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려면 사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완료('25.12.18.) 및 본회의 상정 예정 ○ 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추후 교부금 불용 필요시 기획예산처-시·도교육감협의회 사전협의 지원, 당해연도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용 여부·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검사, 현장조사 비율을 높이는 등 자기적합 확인 대상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책임준비금 편성 등 별정우체국 연금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 적자 상황을 고려하여 우체국예금·보험 유휴재원 활용 등 장기적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및 현장조사 비율을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2026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2027년도 단년도 예산에 책임준비금 편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중 ○ 우편사업특별회계 결손보전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 (2026.5.19)
외교부	○ 외교부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및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 대한 분담금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	○ 외교부는 현행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OCHA 및 CERF에 대한 국제부담금을 향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시켜 관련 심의 및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 - 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에 따라 금년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27년도 편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외교부		성부터 OCHA 및 CERF 분담금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하여 국제기구분담금법상 심의 및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임. * OCHA는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각 주체(정부, 국제기구, NGO 등)간 협조 강화 및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조정', 즉 인도적 지원 관련 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며, CERF는 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수의 공여국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실제 사업을 이행하는 국제기구 등에 지원하는 기금 - 조치예정일 : 2026년 상반기
	○ 외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올리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대학교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의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준수할 것	○ 동 사업 예산 편성 근거 상 복수 대학과 동시에 계약 체결이 필요하나 국가계약법 상 관련 조항(제47조의3 5호)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위 상황을 감안, 올해 사업 예산의 편성 근거를 수정하고 내년도부터 국가계약법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 공고 및 계약을 실시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7년 중
통일부	○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민화협, 민통)에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통일부는 '03년부터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정으로 지원하였으나, (구)기재부·국회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24년 공모방식으로 변경 - 공모방식 전환뿐 아니라 전체 예산규모가 5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민화협과 민통 등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활동 기반이 약화 우려 ○ 중·장기적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그간의 외부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7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 등을 적극 설득 추진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통일부	○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으로 예산 불용 개선 필요	○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재단 미출범 지속 상황임. 관련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이재정의원실에서 발의한 상황이며, 개정 후, 국회 재단이사 추천이 있어야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 지속 협력 소통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함께 기관운영출연금 올해 예산 4억 7,500만원 집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예비비로 충당 할 계획 - (사무실 설치비 3억 7,500만원, 2개월 치 임차료 1억)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청은 유사사업 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운영」 추진 -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 내부 조직으로 통합 추진 * 통합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6.4.23.) 및 개정된 법안 시행일('26.10.1.)
	○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정착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 ※ 해당 예산은 '2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	○ 예산 이관 과정에서 사할린한인 특별생계비 및 임대보증금 증액 등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관계 부처와 노력·협약하였으나 '26년 예산 미반영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성공적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 단가 증액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추후 예산 편성 등 과정에서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방부	국방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과도한 공공요금 이·전용을 통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25~2029년 공공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9년 공공요금 현실화율 100%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공공요금 이·전용을 최소화하겠음.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계룡대와 같은 군 핵심시설의 예비전력이 주전력과는 다른 경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국전력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력설비에 대한 정상작동 여건을 확보할 것	-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주전력·예비 전력 공급체계 이중화 소요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 -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의 현장확인 및 실무협의를 통해 시설 부담금(개략 공사비)을 산출하였으며, 본사 최종 검토 및 승인 후 사업 추진 및 국방 예산을 반영하겠음
	국방부는 무관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려는 포상금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집행될 경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법령의 근거를 마련할 것	- 재외공관 무관 주재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방부령 제 965호 - 국방부장관 보고(26.7월)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26.9월), - 법제처 심사(26. 11월) → 심사 완료 / 공포 (26. 12월)
	국방부는 실질적인 휴가 이용에 부합하는 여비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교통물가(시외버스 운임, 현지교통비) 인상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숙박비, 식비 인상) 등을 고려해 병 휴가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병 휴가여건을 보장 예정 * 기획예산처 협의 및 예산 증액 필요
병무청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병무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센터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제도 개선)	- 온라인 방문예약시스템 개선('26.5월) (기존) 의무자만 신청 가능 (개선) 누구나 방문예약 신청 확대 - 병역자원 감소 등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센터 운영기간, 계약만료시점, 청사 내 충분한 공간확보 등 종합 고려, 청사 내 이전방안 검토·추진 '27년도 대구센터 우선 추진(이전예산 확보 노력, 편성 요구 중)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병무청	○ 병무청은 위반업체에 대해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제재장치를 강화하고, 3진 아웃제 등 실효적인 퇴출시스템을 마련할 것 ○ 병무청은 해외 실태조사의 경우 재외공관에 점검권한 위임, 정기적 순회 점검 체계 구축 등 복무확인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장치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일사항 반복위반 업체에 대한 선정제외 규정을 신설 예정('26년 9월 중) ○ 현지 실태점검을 강화를 위해재외공관을 활용한 조사 권한위임에 대해 외교부에 의견요청하였으나, 수용곤란으로 회신.('26.3.31.) ○ 이에 따라 업무수행상황에 대한 서면전수점검을 실시 하는 한편, 해외 실태조사 지역 및 횟수 확대(연2회→연3회)를 위해 '27년도 예산 증액 요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재정부담 완화 및 수요감소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지방이양기금 용도를 정한 유효기간 연장('26년→'30년) 및 국고지원 등 복무기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행정안전부 ('25.9.25), 보건복지부 ('25.11.5) 등 업무협의 ○ 사회복무요원 제도(인건비) 운영방안 관련, 부처 합동회의('26.1.14.) * 인건비 국고환원 및 국비 보전기간 연장 필요성 협의(국정운영실장 주재, 예산처·행안부·복지부·병무청 국·과장 참석) ○ 국비보전기간 연장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26.2.20., 박용갑의원), 국회 계류중(행안위) * 행안부(4.17.), 예산처 및 국조실(4.22.) 등 업무협의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3년간 지연되었으므로 신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향후 신뢰도시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것	○ '26년 신뢰도시험 일정 고려하여 기존 이월예산 중 사업관리 경비만 '26년으로 이월하고 나머지 납품대금 등은 불용하였음. ○ '26년 4월 신뢰도시험 기간 단축 등 시험방안 개선을 위해 기술검토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27년 예산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안) 편성/집행 예정 * '26년 5월 : 신규 입찰공고 * '26년 11월 ~ '27년 5월 : 신뢰도시험(3개 업체 기준, 업체 당 2개월) * '27년 6월 ~ 11월 : 계약체결 및 1차년도 납품 - 조치예정일: 2027년 11월 30일 * '27년 예산(안) 정부안 제출('26년 9월), 1차년도 납품('27년 11월)
경찰청	-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부과체계 및 제재의 적절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시스템 재정비 또는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차량의 과태료 징수 수단을 모색하며, 담당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경찰청은 과태료의 미수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과태료 수납률 제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과태료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습·고액 및 장기 체납자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미수납 원인 파악 등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징수종합계획 수립 예정 - 조치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관리경비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근거 마련 필요	- 위탁선거관리경비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근거를 규정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지원 중 * 2025. 8.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양부남의원) - ('25.8.28.)행안위 회부 - ('25.11.12.)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적정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사무국당 3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비장애인 종목단체 지원(5.5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력증원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제출('26.1월) 등 '27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2026년 12월 2일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학교예술강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예산 증액 필요성에 따라 '26년 문체부 예산*은 165억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은 262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위한 절차 진행 중 * '25년 130억(추경) → '26년 165억(+35억, +26.8%) - 재정당국,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조치예정일 : 2026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노후 국립지방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를 위해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것	- 수장고 포화도와 노후 수장시설 개선은 재난 대응 및 문화유산 보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6년 예산(4,653백만원) 미반영 -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27년 예산안 반영 추진 '27년 예산 요구액 : 5,975백만원 -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0개년계획 마련('27년 전주, 경주, 춘천, 김해박물관 우선 추진)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체육계의 행정역량 강화와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법인화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부금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의 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인화 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것	- 장애인체육 경기단체의 법인화 전환을 위해 법인화지원금(단체당 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6년 3.5억 원으로 2년에 1개 단체만 지원 가능한 상태로, 인력증원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제출('26.1월) 등 '27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어 별도 법인설립이 어려운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법인설립이 안 된 경기단체 등은 현재 구축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절차 전자화로 처리기간 단축 및 관계자 대상 행정역량 강화 교육 진행하겠음. - 조치예정일: 2026년 12월 2일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농림축산 식품부	○ 향후 FAO 한국협회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 시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이 아닌 별도의 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편성할 것(제도개선)	○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과 FAO 한국협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성격이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분리 편성(농업협상대응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등)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 FAO 한국협회는 FAO의 국가위원회 설치 권고('51년)에 따라 한국의 국가위원회로서 설립('57.12월)되었으며, 국제기구 성격으로 간주하여 '09년부터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해왔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8월 31일
	○ APTERR 수원국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제도개선)	○ APTERR 사업 추진 시 수원국에서의 운영경비를 양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기획처와 협의하여 개선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향후 고객 현장지원 사업 예산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	○ 2027년 예산편성시 기획처와 협의 예정 - 2027년 본예산 요구안 제출 후 기획예산처에 '고객현장지원' 예산은 민원 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농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협의 예정 * 요구안제출('26.5.31.) → 회계변경 예산사업설명('26.6.1.~8.31.) → 정부안 확정('26.9.2.) → 회계변경 예산확정('26.12.2. 예정)
산림청	○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임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두 사업 예산을 통합할 것	○ '26년 사업은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편·분리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27년부터 사업예산을 통합할 수 있도록 '26~'30 중기사업계획 반영 요청('26.2월) ○ '27년 정부안 예산에 통합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 조치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의 착수부터 납품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차년도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규헬기 도입 예산은 3차년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제작 기간은 36개월, 계약부터 납품까지 4년 소요로 불가피하게 수입부가세(납부기관납부) 이월 - 당초 계약기간 24개월로 추진하였으나, 사전규격공개에서 계약기간 변경요청으로 수정함 - 중형급(2,500ℓ) 헬기는 '22년 24개월 계약하였으나 '24년부터 36개월로 추진중 - 대형급(5,000ℓ) 헬기는 '22년부터 36개월로 계약하고 있음 ○ 신규제작 헬기의 실제 소요기간을 반영한 사업기간 조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0월 31일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철저히 수립할 것 ○ 해양경찰청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유지보수비는 정보화사업예산으로 전환할 것 ○ 해양경찰청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것	○ 일반예산편성 유지보수비의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전환은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처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조정 및 중장기 예산 반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이·전용을 최소화할 것	○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 공공요금이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증액 추진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중인 국내여비 예산 규모를 현실화하며, 법령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제도개선)	- 지재위는 총괄, 조정 업무 특성상 서울 회의가 잦으며, 이로 인한 국내 여비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세목 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차년도 예산편성 시 국내여비 현실화를 위한 수요를 제출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할 예정 - 지재위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법정안전인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제1항) - 해당 연차보고서를 매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함에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매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 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고정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차년도 부터는 관련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편성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청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출연사업 운영비를 별도 내역으로 편성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적정 운영비 규모에 대해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칠 것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의 수지차보전 예산 편성시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등 실제 결산상 적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년도 예산안 편성(정부안 국회제출) 시, 출연사업운영비를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 내역으로 편성 예정 '27년 예산 편성 시 최신 결산자료,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변화 추이 등 수지차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현재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출장·교통비 미지급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4년 중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력 증원하고(696→766명), 처우개선을 위한 경력수당 도입, 심리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 실시 ○ '25년 이후에도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력수당 지급, 힐링캠프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 충원 확대 및 추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지속
	○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후준비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해, 차후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로 사업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체계적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도별 의료급여기금의 적립금 수준과 적립금 활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소진으로 '25년 미지급금 발생, 수급자 및 진료비 실제 급증 상황 반영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노력하겠음
기후에너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집행이 저조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수행과 과제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예산 편성 시 실집행 부진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정상 연부율 보다 낮은 연부율을 적용하는 한편, 사업추진 지연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을 감액하여 집행 가능 타 사업으로 내역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계획임 - 조치예정일 : 2026년 9월 3일
	○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정책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고유사업·신규사업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지출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기금 목적사업의 예산 규모 확대,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출규모가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의 적극 협의하고 적정규모의 여유자금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음 -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태양광, 히트펌프 설치 등) 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 - 조치예정일 : 2026년 9월 3일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기후에너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도록 관리할 것	○ 야생포유류·야생조류 AI 조사인력(예찰 인력)의 상용임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6년 예산안에 미반영되었음 - '27년 예산안에 상용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25년부터 출입통제 시스템은 관리용역비, 기념품 구매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9월 3일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유인 제공 여부, 현재 취약계층 소득 수준 대비 지원비율 및 한도의 적정성, 보조금 신청 용이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업수행체계 다변화, 홍보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불용 및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 '24년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했음 - '25년은 지원비율을 상향(20%→30%)하고 사업 홍보도 지속 추진하여 연내 실효를 완료하였음 ○ 향후 지원비율 및 한도 확대*, 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음 * 27년 예산 부처안 반영 추진 - 아울러,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지자체 간담회,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5월 31일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축소·구체화하여 기금사업의 차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다른 회계로 이관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R&D 기술분류체계상 기후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면서, '30년 기준 잠재 감축량이 높은 사업을 신규 발굴(28개) 및 편입(6개)하였음 ○ 기후대응기금 내 적응사업 중 하나인 '공정한 전환' 지원 규모를 확대 중('26년도 전년 대비 +5.9%)이며, -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 개정을 통해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적응 관련 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음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기후에너지 환경부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재편하고, 기후적응 관련 사업 비율을 OECD 주요국 평균인 30%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것	○ 향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상 기금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제외 다른 회계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9월 3일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공공 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 기획재정부는 향후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 과정에서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 증액(전년 대비 +4,164억원)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감액(전년 대비 △2,199억원)하여, 예수금 의존도를 줄였음 ○ 향후 기후대응기금 확대 과정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9월 3일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사업 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 및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사업 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을 사업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대기업이 신산업 진출 등 산업 재편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효과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산업분야에 사업재편지원을 위하여 '16년도부터 산업통상부 일반회계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음, '22년 기후대응기금 편입 및 '탄소중립' 유형 신설 시행('24.3)이후 기금 및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에 맞춰 '탄소중립'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산업분야에 사업재편 지원을 하기 위해 '27년도 예산의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이관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 기업활력법 개정시행('26.10.)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자금지원 허용(제9조제2항제11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뿐만아니라 감축시에도 자금지원을 허용(제28조제2항제2호)하는 등 대기업 등의 사업재편 지원 확대 추진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기상청	○ 기상청은 청년·저연차 공무원, 도서·벽지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임차관사를 공급하고, 임차관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제도개선)	○ 국립기상과학원 비연고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재정당국과 임차관사 예산확보를 위한 증액 추진 - '27년 행안부 청사수급 계획 반영 완료('26.4) * 행안부 방문 및 협의('26.3.30.), '27년 청사수급 최종 반영(15채, 375㎡) ○ '27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26. F)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안정적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도별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추진 - '25년, 26년 단계적 물량 확대 추진(완료) * ('25년) 11,000명(당초) → 11,390명('25.10. 기금변경) → ('26년) 11,700명(완료) ○ (동시지원 기준) 동시지원 기준 명확화 - 2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같은 장소, 같은 직무,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고, 장애인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의 동의가 있고, 지원평가 결과 동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 - 관련 내규(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개정 ○ (인력 수급) 안정적 근로지원인 인력 운영을 위한 근로지원인 상시 양성기관 도입 및 보수교육 확대 * (상시 양성기관) (신규) '25년 3개소 → '26년 8개소 (보수교육) '24년 741명 → '25년 929명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 (처우 개선) 현재 전문 자격자 등에게 가산 수당 지급* 증으로 지속 노력하겠음 * (전문자격)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등 임금의 120% 가산 (동시지원) (1:1) 임금의 100% → 1:2 120%, 1:3 130%, 1:4 140%, 1:5 150% 가산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자료: 전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³¹⁾ 16건에 대하여 2025년 4월 기준 조치완료 7건, 조치 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중은 2020회계연도 42.9%에서 2021회계연도 33.3%, 2022회계연도 34.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38.2%, 2024회계연도에는 56.33%로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대의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20회계연도 결산	21	12	9	42.9
2021회계연도 결산	21	14	7	33.3
2022회계연도 결산	26	17	9	34.6
2023회계연도 결산	34	21	13	38.2
2024회계연도 결산	16	7	9	56.3

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부대의견(3건)은 별도로 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각 연도.

31)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기획예산처	○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한다.	○ '26년 예산 편성시, 단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성과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도모하는 등 경제·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2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채무 증가 최소화 노력 - 아울러, 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연례협의·고위급 면담을 지속하고, 효율적 국채관리를 위해 투자자 성향·조달비용·상환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화된 장·단기 국채 발행비중 운영 및 잔존만기 관리강화	조치완료
국방부	○ 국방부는 소형자폭드론 구매 관련 과도한 예산이·전용에 대해 자체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 '26년 내 국방부장관 보고 후 감사관실 주관 자체 특정감사 실시 예정	조치중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관구성방식이 시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 등을 검토한다.	○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한 기관 구성 다양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7.29.) - ‘기관 구성 다양화’ 법제화 방식 자문(9.11.~9.19.) - ‘기관 구성 다양화 특별법 제정안’ 등 내부 검토 중	조치중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중과세 면적 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고급주택 면적 판단 기준 개선, 가액기준 상향, 시설기준 폐지 등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완료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26년) - 지방정부 의견수렴 회의(2.24., 4.2.)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1월, 3월)	조치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다.	○ 2025. 2. 6. 국회 현안 보고 (배·보상 입법, 조사기간 연장 등) * 행안위 위원장, 행안위 의원(조은희, 윤건영, 김성희 의원 등) * 현재 배·보상관련 입법 의무를 과거사기본법(대안)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 중 - 진실규명대상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개별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나, 별도의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 * 1기 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정책 권고(‘09. 8. 21.) 2기 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입법 정책 권고(‘22. 11. 22.)	조치완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선발제도 및 적정 규모에 대해 점검한다.	○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 관련 선발제도 및 규모 점검을 통해 사업 일부 변경 및 규모 축소 완료 - 해외연수 사업의 지원자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해외 단기연수 및 중기연수 폐지, 장기연수 등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 규모 축소	조치완료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기금위(실행위) 위원 대상으로 위원장(제1차관) 주재 기금운용세미나 개최(10.1, 금융계 현장 전문가 초청)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위원장 3인)을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금융관련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상근전문위원 신규 위촉(3.10) -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 : 한국금융학회 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역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금융자본시장 분야 전문가 -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 금융투자협회 등 재직,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률 분야 전문가 -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 한국증권학회 부회장, 한국금융공학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금융·재무 분야 전문가	조치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4대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함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녹조독소 실태조사 실시 완료(‘25.10.15 ~ ’26.3.12.)	조치완료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방공기업 중 안전활동수준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평가 근거를 마련(노동부 고시 제 2026-16호, '26.3.4.)하고 평가 실시 - 또한, 행안부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확정 '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중 32개 기관을 평가하여 1점 반영 예정 '26년 4월 32개 기관에 대해 종합 및 현장작동성평가 완료(4.8~4.24) - 그 외 경영평가 대상 132개 지방공기업은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0.5점 감점) '27년에는 지방공사·공단 중 167개 지방공기업으로 평가 대상 확대 - 이에 따라 '26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지표·체계·방법 등을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예산 확보 노력 병행	조치완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기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철도 노선의 지하플랫폼과 연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노선 및 추진계획 중인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조치중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빈 건축물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비근거를 마련한다.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10.2)하여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등 빈 건축물의 관리·실태조사, 정비·활용 활성화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후속으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 *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25.12.12일 발의	조치중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조치완료
	국토교통부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철도 등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25.12월말 기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광역교통시설 등을 확충토록 하겠음	조치중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철도 급행화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한다.	-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건설·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급행화 사업을 반영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부에 승인 요청 시 후속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 도시철도 급행화 사업이 포함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현황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21~’30) 변경 승인(‘26.2.1.3 고시) *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26~’35) 수립 승인(‘26.上 예정)	조치중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공통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계별 민관협의체 및 주민간담회에서 기후부의 취·양수장 개선사업 취지 및 추진방향 설명 - (영산강) '25.9.22, (한강) '25.10.27, (낙동강) '25.10.23(중·상류), '25.10.30(하류)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사업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및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 ○ 농어촌물포럼 및 농업인 단체 연계 홍보 - 농어촌물포럼 및 농업인 단체와 협력하여 마을 방송, 사업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농업인 대상 홍보 실시 ○ 온라인·언론 홍보 병행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누리집, 소식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이 농업용수의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임.	조치중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공통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재정경제부) ○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 마사회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결정 취소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 검토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방통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승인’ 관련 1차 행정소송결과(11.28) 후 유진그룹이 항소함에 따라, 법정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 검토 추진	조치중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26.5)」를 바탕으로 재작성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5건으로 주의 3건, 제도개선 2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 5건으로 보고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경호처	-	-	-	-	1	-	1	1	-
국회	-	-	-	2	1	-	3	3	-
국가인권위원회	-	-	-	1	-	-	1	1	-
합계	-	-	-	3	2	-	5	5	-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136건으로 시정 12건, 주의 24건, 제도개선 101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5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15건이며, 조치중 2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공공요금 부족을 이유로 한 이·전용’ 등 2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5.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법무부	-	-	7	8	45	(1)	59	46	13
법제처	-	-	1	3	10	-	14	14	-
감사원	-	-	3	2	11	-	16	14	2
헌법재판소	-	-	-	-	16	-	16	16	-
대법원	-	-	1	10	14	-	25	19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1	5	-	6	6	-
합계	-	-	12	24	101	(1)	136	115	2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공공요금 부족을 이유로 한 이·전용(법무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법무부의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검찰청

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항목의 경비를 과다 전용하였다. 2024년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당초 총 29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에 이어 재차 상당 규모의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14.1%인 41억 2,1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경비로부터 전용하여, 총 33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회는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편성함으로써, 필수경비 부족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검찰 전체 공공요금을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 증액하는 등 모자란 예산은 증액하고 남는 예산은 감액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고, 공공요금은 검찰청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은 물론,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를 신청하는 등 대규모의 이·전용을 지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25회계연도에도 다수의 사업으로부터 공공요금의 부족을 이유로 상당 금액을 자체전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의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에서의 공공요금 부족을 이유로 같은 사업 및 타 사업으로부터 13억 4,200만원을 자체전용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에 여러 수사지원 사업에서도 자산취득비(430-01) 및 포상금(310-03), 상용임금(110-03)을 자체전용하여 공공요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액은 36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자체전용 현황]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09.12.)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20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자체전용 (2025.09.12.)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20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16.)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110-03	10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71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430-01	35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71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430-01	35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16.)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110-03	200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02
자체전용 (2025.9.12.)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110-03	500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210-02
자체전용 (2025.9.12.)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420-03	200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210-02
자체전용 (2025.9.12.)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430-01	400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210-02
자체전용 (2025.12.16.)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110-03	650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210-02
자체전용 (2025.12.16.)	공공수사 (1335-302)	310-03	168	공공수사 (1335-302)	210-02
자체전용 (2025.12.16.)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310-04	17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1335-303)	210-02
자체전용 (2025.9.12.)	마약수사 (1335-304)	430-01	100	마약수사 (1335-304)	210-02
자체전용 (2025.12.16.)	마약수사 (1335-304)	310-03	120	마약수사 (1335-304)	210-02
합계			3,697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공공요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공공요금을 추계하고,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의 발생(법무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법무부의 국가배상금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022년 213억 9,700만원, 2023년 152억원, 2024년 137억6,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이월액은 2022년 1억 4,934만원(14건), 2023년 3,566만원(9건), 2024년 1억 7,053만원(2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을 최소화하며 적정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미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3,053억원(1차 2,431억원, 2차 622억원)을 배정받아 즉시 집행하였다고 하면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6년 현재까지도 국가배상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25년 지연이자 244억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 5월에도 지연손해금 지급액은 122억 2,7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연도별 지급내역]

구분	배상금 총 지급액(a)	지연이자 지급액(b)	(b/a)×100
2021	124,450	84,304	67.7
2022	149,311	21,397	14.3
2023	100,253	15,293	15.3
2024	107,743	13,768	12.8
2025	437,279	24,405	5.6
2026. 5.	210,816	12,227	5.8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6년 국가배상금 본예산을 이미 3월에 소진하였고, 이에 5월 14일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5월 20일 통과하여 총 2,457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예산 소진과 예비비 신청 및 집행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미지급 국가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에 2026년 5월 현재 미지급한 국가배상금은 2,113억 2,500만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88억 2,70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미지급 국가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미지급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2026.5.	211,325	8,827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국가배상금의 구체적인 추계를 통하여 본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편성하고,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 은 총 204건으로 시정 16건, 주의 73건, 제도개선 132건이며, 이 중 1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77건이며, 조치중 27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용 문제 개선’ 등 2건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5	11	36	-	52	44	8
국가보훈부	-	-	6	22	32	(7)	53	48	5
공정거래위원회	-	-	3	6	21	(1)	29	27	2
금융위원회	-	-	2	17	28	(7)	40	32	8
국민권익위원회	-	-	-	11	7	-	18	15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6	8	(2)	12	11	1
합계	-	-	16	73	132	(17)	204	177	2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용 문제 개선(국가보훈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비 감면분을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을 통해 병원에 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과다한 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용 규모는 2023년의 경우 보훈병원 393억 8,500만원, 위탁병원 79억 4,600만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보훈병원 553억 1,200만원, 위탁병원 368억 1,9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국회의 의무지출 보전금 규모 산정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과다한 이용이 반복되는 것은 재정 통제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로 하여금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용 문제를 개선하라는 국회 시정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는 보상금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진료비 부족분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진료비 예산을 2025년 본예산 대비 증액하였음을 근거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가보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가보훈부는 의료비 보전을 위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미지급금 발생 및 이용을 통한 충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5회계연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집행 현황을 보면, 제2회 추경을 통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훈병원 760억 8,900만원, 위탁병원 377억 2,900만원의 미지급금을 발생시켰다.

해당 미지급금은 202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교부한 보조금을 통해 정산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6년 진료비 보전금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처럼 진료비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2026년에도 이용을 통해 충당하거나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 보고한 것은 진료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보전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미지급금을 발생시키거나 이용을 통해 충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적금상품 사업 소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금융위원회)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2026년 신규사업)은 청년층이 자유납입한 적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기여금 매칭 대상이 되는 가입 유지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편성한 출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교부함에 따라 기관에 유보된 이월액을 발생시킨 문제가 있다.

국회는 신사업(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가입실적이 더욱 둔화될 것을 감안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내 유보 현황과 가입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것 등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2025년말 상품 신규가입 중단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분만을 편성한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금융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편성한 청년도약계좌 2026년 기여금 지급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청년미래적금 출시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5년말까지 예상 가입인원 270만명 중 상당수가 2026년 신규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청년도약계좌 평균 기여금 지급 대상을 135만명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5년말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인원은 255만명, 가입유지인원은 205만명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의 당초 예상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적정 규모의 예

산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 편성 당시 확인 가능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평균 가입유지 인원을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기여금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2026년 기여금 지급 대상을 연평균 약 135만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은 2026년 6월 신규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 가입을 위한 중도해지가 활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한 것인데, 실제 전환 가입 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계 정확성 제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조치완료로 보고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후 전환 가입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2026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은 총 166건으로 시정 38건, 주의 18건, 제도개선 113건이며, 이 중 3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40건이며, 조치중 26건으로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관행’ 등 6건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재정경제부	-	-	28	12	44	(2)	82	74	8
기획예산처	-	-	1	1	17	-	19	15	4
국가데이터처	-	-	3	1	11	(1)	14	11	3
국세청	-	-	-	3	17	-	20	14	6
관세청	-	-	3	-	13	-	16	15	1
조달청	-	-	3	1	11	-	15	11	4
합계	-	-	38	18	113	(3)	166	140	2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예산처	1	1	-
합계	1	1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관행(재정경제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10건이고, 21건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또는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하고, 최근 5년간 34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27건을 비공개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및 비공개 관행이 지적되었다.

국회는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연구용역 예산 배정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용역 결과 공개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2025.10).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재정경제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92%로 전년(86.5%) 대비 증가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재정경제부의 연도별 정책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일반경쟁입찰 건수가 매년 5건 이하에 불과하다. 제한경쟁이나 경쟁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정책연구는 3년간 총 221건(90.9%)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책연구 수의계약 비중]

(단위: 건,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의계약	79	95.2	77	86.5	69	92.0	225	91.1
경쟁후수의	3	3.6	8	9.0	2	2.7	13	5.3
제한경쟁	0	0.0	3	3.4	1	1.3	4	1.6
일반경쟁	1	1.2	1	1.1	3	4.0	5	2.0
합계	83	100.0	89	100.0	75	100.0	247	100.0

자료: 재정경제부

따라서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등(기획예산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기획예산처로 하여금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결산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26년 예산 편성시, 단순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전략적·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도모하는 등 경제·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2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채무증가 최소화 노력을 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2025.12.2).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예산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부대의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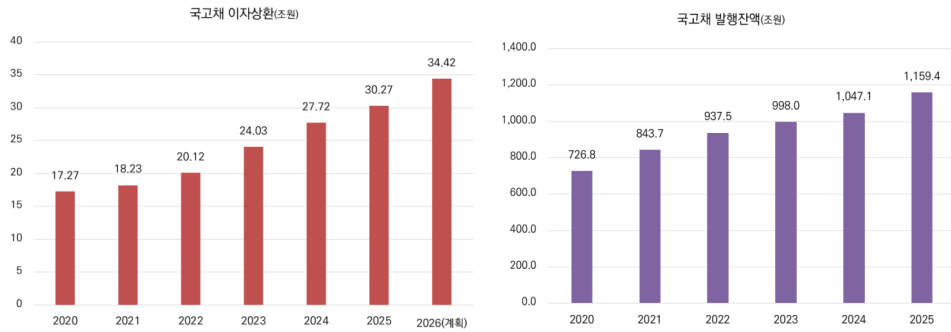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를 포함하여 2025년 2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고채 이자비용 또한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국채 및 이자비용에 대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2025년 결산 기준 국고채¹⁾ 이자비용은 30.3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조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 비해서는 약 50%가 증가하였다. 또한, 2026년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은 34.4조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1)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개인투자용국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이 있으며, 본 사업은 국고채와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연도별 국고채 잔액 및 이자비용]

연도	국고채 잔액		국고채 이자상환	
	금액(조원)	전년 대비 증가율	금액(백만원)	전년 대비 증가율
2020	726.8	-	17,273,739	-
2021	843.7	16.1%	18,225,615	5.5%
2022	937.5	11.1%	20,120,245	10.4%
2023	998.0	6.5%	24,030,807	19.4%
2024	1,047.1	4.9%	27,724,637	15.4%
2025	1,159.4	10.7%	30,273,698	9.2%
2026(계획)	-	-	34,422,079	13.7%



주: 이자상환은 결산 기준(단, 2026년은 계획현액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고채 잔액은 2020년 726.8조원에서 2025년 1,159.4조원으로 5년간 59.5% 확대되었으며, 전체 채권 대비 비중도 35.5%에서 41.9%로 높아졌다. 2023~2024년 중 순발행 규모가 각각 60.5조, 49.2조로 다소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5년 국고채 발행량은 총 226.2조원으로 연간 발행 규모 200조원을 사상 처음 돌파하였으며, 국가채무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규모(112.3조원)는 전년(49.2조원) 대비 63.1조원 급증하였다. 이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26년 이후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연도별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추이]

(단위: 조원)

구분	국고채 발행	국고채 상환	순발행
2020	174.5	59.2	115.3
2021	180.5	63.6	116.9
2022	168.6	74.8	93.8
2023	165.7	105.2	60.5
2024	157.7	108.5	49.2
2025	226.2	113.9	112.3

자료: 재정경제부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20년 1.38%에서 2022년 3.17%, 2023년 3.57%로 급등한 후 2025년 2.66%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잔존만기가 2014년 7.11년에서 2025년 13.74년으로 매년 장기화되고 있어, 2022~2023년 고금리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30년대 중반까지 지속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및 평균잔존만기]

연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2020	1.38%	11.31년
2021	1.79%	11.66년
2022	3.17%	12.00년
2023	3.57%	12.64년
2024	3.22%	13.16년
2025	2.66%	13.74년

자료: 재정경제부

발행잔액 만기 구조를 보면, 30년물 비중이 2020년 21.8%에서 2025년 36.0%로 상승하였으며, 10년 초과 장기물이 전체의 54.1%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가 장기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차환 부담 분산을 위해 장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해온 정책적 결과이나, 이자 지출이 수십 년에 걸쳐 장기 고착화된다는 측면에서 이자비용의 구조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기별 국고채 발행잔액 구성 추이]

(단위: 조원, %)

만기	2020		2022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년물	-	-	30.4	3.0	28.7	2.7	35.9	3.1
3년물	62.7	8.6	82.0	8.7	67.4	6.4	82.9	7.2
5년물	109.1	15.0	122.9	13.1	128.0	12.2	132.8	11.5
10년물	240.9	33.1	272.1	29.0	273.0	26.1	275.2	23.7
물가	8.5	1.2	6.4	0.7	6.7	0.6	6.1	0.5
20년물	136.7	18.8	154.1	16.4	167.1	16.0	171.5	14.8
30년물	158.1	21.8	253.0	27.0	346.8	33.1	417.2	36.0
50년물	10.8	1.5	19.7	2.1	29.4	2.8	37.8	3.3
합계	726.8	100.0	937.5	100.0	1,047.1	100.0	1,159.4	100.0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2025년 말 기준 2026년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는 90.5조원, 2027년은 108.0조원으로 2년간 합계 198.5조원(전체의 17.1%)에 달한다. 이 물량의 차환 발행 시 당해 시점 금리가 적용되는데, 최근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은 신규발행분 외에 올해 차환 물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2025년말 기준)]

(단위: 조원, %)

연도	만기도래액	비중	비고
2026	90.5	7.8	대규모 만기
2027	108.0	9.3	대규모 만기
2028	88.1	7.6	.
2029	63.2	5.5	.
2030	85.3	7.4	.
2031	51.6	4.5	.
2032	30.1	2.6	.
2033~2035	103.0	8.9	.
2036~2040	46.5	4.0	.
2041~	493.1	42.5	장기물 집중
합계	1,159.4	100.0	.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월별 국고채 발행액 및 조달금리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5				2026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발행잔액	1,152.6	1,166.8	1,178.9	1,159.4	1,176.8	1,198.7	1,189.3	1,208.9
발행액	21.5	17.7	15.6	5.4	17.9	22.4	21.2	22.6
평균 조달금리	2.61	2.68	3.01	3.15	3.18	3.40	3.50	3.60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년 국채시장은 美 연준의 신중한 금리인하 행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하방 경직성 등 복합 요인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받았다. 특히 추정 편성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가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여, 5~6월 및 9~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다. 2026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외 여건에 따른 조달금리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이다. 다만 같은 의무지출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험급여·지방교부세 등은 당해연도에 국민의 생활 안정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반면, 국채이자 지출은 과거의 재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에 수반되는 사후적 금융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새로운 재정 서비스나 직접적 수혜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과거 재정운용의 결과로 고착된 경직성 지출의 성격을 가지며, 그만큼 당해연도의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할 재정여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자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15%에서 2025년 4.31%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26년 계획 기준으로는 4.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753.1조원 중 34.4조원이 이자 지급에 소요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재원이 교육·복지·인프라 등 생산적 재정 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채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 하에서 이자지출 비중의 상승은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지속적으로 잠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연도별 총지출 및 국고채 이자비용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총지출(A)	국고채 이자상환(B)	비중(B/A)
2020	549.9	17.3	3.15
2021	601.0	18.2	3.03
2022	682.4	20.1	2.95
2023	610.7	24.0	3.93
2024	638.0	27.7	4.34
2025	703.3	30.3	4.31
2026(계획)	753.1	34.4	4.57

자료: 연도별 결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와 WGBI 편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채시장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2026년 1분기에 5조원 규모의 긴급바이백을 실시하였으며, 제1회 추경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실시하는 등 시장 수급 부담을 완충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 시장 안정에 방점이 놓여 있고, 정부가 기대하는 국채시장의 구조적 안정 요인은 사실상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수요 확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은 국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 만기구조 평탄화를 통한 차환 리스크 분산, 조달·운용 금리 구조 개선 등 이자비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국가데이터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조사 불응률이 상승한 가운데 국가데이터처는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답례품 등 인센티브 부여, 응답 편의성 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정보노출 기피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정보 보호 강화,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조사필요성 인식·공감을 위한 대국민 홍보,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를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가데이터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조사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등으로 2026년 들어서도 일부 통계는 응답률이 하락하고 있는바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의 경우 2025년 45.1%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46.0%, 경제활동인구조사 2025년 13.5%에서 2026년 4월 기준 13.9%로 상승하는 등 2026년에도 통계조사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조사의 응답률 개선 노력과 행정자료 활용 등으로 통계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비율 제고 및 청년층 부담 완화 노력 필요(국세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2020년 이후 미상환 인원과 금액 및 비율, 평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환유예 인원·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 및 상환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무 상환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상환기준소득 상향 등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환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역량을 집중하고, 상환유예자에 대해서는 연체금 발생없이 유예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하였다. 그리고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부담 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상환기준소득²⁾을 상향하고, 연체금³⁾을 인하하였으며, 의무상환액 산정시 적용하는 상환율도 낮출 수 있도록 교육부에 추가 건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세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자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 상환능력과 체납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 상담, 분할납부, 상환유예, 소득·재산 확인, 체납처분 등 차등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국회의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상환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역량을 집중하고 청년층의 의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국세청은 학자금 미상환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상환능력이 충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상환기준소득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미상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모도 2021년 182명, 8,200만원에서 2025년 2,647명, 6억 5,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환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소득구간에 대해서도 사후적 체납처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득구간별 완충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24년 1,752만 원에서 '25년 1,898만 원으로 상향

3) 연체금을 3%에서 2%로 인하, 연체가산금을 월1.2%(5개월, 한도6%)에서 월 0.5%(6개월, 한도 3%)로 인하하였고 총 한도도 9%에서 5%로 인하함

[상환기준소득 초과 직후 구간 강제징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환기준소득 총급여 환산 시	2,280	2,394	2,525	2,679	2,851
해당 총급여 110% 수준 소득 ¹⁾	2,500	2,650	2,750	2,950	3,150
미상환 체납자 수	7,629	8,303	9,367	10,003	10,302
강제징수 인원	182	582	775	1,887	2,647
강제징수 금액	82	110	158	414	653

주: 1) 아래 수치들은 해당 총급여 110% 수준인 이하 미상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 상환기준소득 2,851만원의 110% 수준인 총급여 3,150만원 미만인 미상환 체납자수, 강제징수 인원, 강제징수 금액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자에 대해 소득구간별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환기준소득 인접 구간의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상담, 분할납부, 상환유예 가능성 확인 등 완충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중간소득 구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과 체납액 규모를 고려하여 납부계획 제출, 분할납부, 소득·재산 확인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소득·고액·반복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확인과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관세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관세청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20년 130억 6,400만원에서 2024년 839억 6,200만원으로 5년간 542.7% 증가했으나,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 72.9%에서 2024년 13.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국회는 유관부서와 TF 구성을 통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과중한 징수·체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태료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협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위한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관세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과태료 미수납액 중 체납정리중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청은 체납관리 대상을 세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조치를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2025년 과태료 미수납액은 616억 2,000만원으로 전년 749억 8,000만원 대비 감소하였다. 다만 전체 미수납액의 감소가 과태료 체납관리 부담의 완화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수납액 중 납기미도래·징수유예 등은 일시적 또는 절차상 미수납의 성격이 있는 반면, 체납정리중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적극적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청의 과태료 미수납액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체납정리중 미수납액은 2023년 216억 2,700만원에서 2024년 351억 7,700만원, 2025년 551억 4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 과태료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합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납 정리중	
2021	34,992	6	653	2	1,011	33,320	1,198
2022	44,273	286	1,729	444	2,233	39,581	194
2023	53,515	628	6,305	362	24,592	21,627	138
2024	74,980	-	15,422	168	24,212	35,177	542
2025	61,620	-	2,054	163	4,300	55,104	715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기존 조치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금액·체납기간·재산 보유 여부·반복 체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체납유형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액·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통한 집중관리와 재산조회·압류 등 징수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소액 또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납 전담팀 운영, 분할납부, 납부 기일 연기 등을 병행함으로써 징수 실효성과 납부자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의 정보 공유 및 업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과태료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96건으로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82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74건이며, 조치중 2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미흡’ 등 2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	-	8	6	76	-	90	68	22
국가교육위원회	-	-	-	-	6	-	6	6	-
합계	-	-	8	6	82	-	96	74	2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미흡(교육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연동 방식으로 세입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인 한편, 최근 세수체계 오차로 변동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불용처리로 재정운용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던 바 있다.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세제 개편과 연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을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교육 분야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교부금 불용처리 시 사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의와 협의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¹⁾하여 세수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교육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을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교육 분야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구조가 이번 조치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은 2024,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잔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된다. 2026년도 예산부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된다.

1)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교육세 배분 체계 개편]

기존(2024, 2025회계연도)		개편(2026년도 예산)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	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②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③ 보통교부금 재원		③ 보통교부금 재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보면, 2024, 2025회계연도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잔액의 5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며, 나머지 50%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구조이다. 즉,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액수를 결정하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과 보통교부금 교육세분의 규모가 정해졌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부터는 교육세 세입액 중 금융·보험업자분(「교육세법」 제5조 제1항제1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그 밖에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에 대한 부가세분(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60%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출하며, 나머지 40%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한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분을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교육 분야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구조는 2024, 2025회계연도에 이미 존재하였고, 2026년도의 개편으로 특별히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대규모 이월(교육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실집행률(54.4%)이 저조하고,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등 예산 상당액이 이월 또는 재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연내 집행 가능성과 관계 없이 관련 예산이 전액 교부되고 있었다.

국회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 교부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월 최소화를 위해 월별 실집행 실적 점검, 주기적인 내역사업 관리 등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를 실시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집행을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교육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교부 예산 이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지 못하였고,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이 제고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회 시정요구 사항의 취지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에는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년도 이월액 규모가 커 이월액은 444억 4,700만원에서 390억 7,000만원으로 약 12%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5회계연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피출연, 피보조 기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D/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E)			
117,057	117,057	51,816	51,816	44,447	96,263	57,121	51,816	45,775	39,070	72	48.8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 교부액 대비 집행액(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는 실집행률(88.3%)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48.8%에 그쳤다.

[2025회계연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실집행률]

(단위: %)

예산액 기준 (D/A)	교부액 기준	
	전년도 이월액 포함(D/C)	전년도 이월액 제외(E/B)
48.8	59.3	88.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에는 예산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피출연, 피보조기관의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교육부가 미교부한 예산의 이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결산(2022~2025)]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65,260	65,260	-	-	9,375	74,635	66,343	43,657	58.5	-	8,292
2023	78,833	78,833	-	-	-	78,833	62,296	34,032	43.2	-	16,537
2024	111,369	111,369	-	-	-	111,369	107,960	60,572	54.4	-	3,408
2025	117,057	117,057	-	-	-	117,057	51,816	45,775	39.1	61,895	3,346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피출연, 피보조기관뿐만 아니라 미교부 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소관부처 변경이 예정(2026. 8. 20.)되어 있으므로 관리체계 개편을 계기로 해당 사업 및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159건으로 시정 12건, 주의 65건, 제도개선 104건이며, 이 중 2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23건이며, 조치중 36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 구축사업(R&D)의 실행 부진 및 출연금 이월’ 등 1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	49	80	(15)	120	93	27
우주항공청	-	-	-	6	6	-	12	1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6	9	11	(6)	20	14	6
원자력안전위원회	-	-	-	1	7	(1)	7	4	3
합계	-	-	12	65	104	(22)	159	123	3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 구축사업(R&D)의 실행 부진 및 출연금 이월(우주항공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의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민간발사장 구축,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등 6개 세부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고,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2024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예산 집행지침」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연구개발 출연금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을 중기 재정계획상 투자계획(665억원) 대비 현실화한 184억 6,800만원 수준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향후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시정조치 완료로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우주항공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사업 순연으로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25회계연도 예산 230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교부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수행기관에 누적된 미집행 잔액이 315억 9,600만원(실집행률은 6.1%)에 이르는 등 미집행 예산의 이월 및 누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2024년 사업 착수 지연으로 약 85억 5,063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예산 230억원이 당초 계획대로 배정·교부되어 수행기관 가용예산은 약 315억 5,063만원에 이르렀으나, 수행기관의 실집행액은 19억 3,500만원으로 가용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으나,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2026년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 36억원 대비 약 92% 증액된 6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우주항공청은 동 내역사업에 대해 2026년 11월에 공사비 선금 28억 500만원을, 12월에 장비비 34억 2,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을 근거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동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후 기획예산처와의 사업규모·총사업비·사

업기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공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계획된 시점 내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비비 또한 동 사업이 2024년 11월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상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만 장비 도입이 가능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실시설계 완료 후 장비심의·개찰·선정평가 등 절차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가용예산 대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전년도 이월액(A)	2025 당초예산 (B)	가용예산 (A+B)	실집행액	실집행률
합 계	8,596	23,000	31,596	1,935	6.1
민간발사장 구축	1,891	2,600	4,491	222	4.9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¹⁾	1,420	3,600	5,020	567	11.3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089	10,000	12,089	458	3.8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500	3,200	4,700	331	7.0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1,696	3,600	5,296	357	6.7

주: 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기관부담 현물 18억 4,575만원 포함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내역사업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결국 우주항공청이 2026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비비 등의 집행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6회계연도에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을 단순히 교부액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실집행률, 기본·실시설계 진행 상황, 장비심의 및 조달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수행기관의 미집행액 누적 및 이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117건으로 시정 2건, 주의 34건, 제도개선 83건이며, 이 중 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00건이며, 조치중 17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설문조사 예산 재검토 및 수행 불가능 국가 대상 보완방안 마련 필요’ 등 2건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	-	1	21	42	(1)	63	58	5
통일부	-	-	1	11	29	(1)	40	32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1	6	-	7	5	2
재외동포청	-	-	-	1	6	-	7	5	2
합계	-	-	2	34	83	(2)	117	100	1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설문조사 예산 재검토 및 수행 불가능 국가 대상 보완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는 당초 계획 대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등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동 조사는 계획 대비 조

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특히 통일 관련 주요 이해관계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통일외교의 추진 보완 방향과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설문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전문가 자문 등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전문가 자문 및 조사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대상국에 주요 이해관계국인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였으며,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세미나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통일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주요 이해관계국에 대한 보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조사결과
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조사대상에서 한반도 통일의 주요 이해관계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외되어 있어 당초 계획하였던 통일외교의 추진 보완 방향과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통일부는 간접적 보완 방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나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등은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완책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2026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러시아에 대한 조사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을 매년 조사하고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나 인도-태평양 국가까지 확대하여 매년 조사할 필요성 등 조사 실시 주거나 조사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도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한반도·국제정세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조사 결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정책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조사 주기 및 조사 국가를 재검토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통일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4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되는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통일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국제기구와의 실무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하는 등 국외출장 경비를 절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부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계획을 미흡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향후 대북 소통채널 복구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다자협력사업 등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모색해 나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통일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은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래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에 집행률이 부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를 받고 조치완료(2025.12.31.)로 조치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2025년에도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집행률 54.2%)하는 데 그쳤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하는 등 사업의 집행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나, 예산 편성 당시와 북한의 태도가 크게 변화한 점은 없다는 점과 2024년부터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정책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해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위해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적정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발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106건으로 시정 19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55건이며, 이 중 9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88건이며, 조치중 18건으로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초과집행 지속문제’ 등 2건이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	-	16	24	32	(5)	67	58	9
병무청	-	-	1	3	13	(2)	15	12	3
방위사업청	-	-	2	14	10	(2)	24	18	6
합계	-	-	19	41	55	(9)	106	88	1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1	-	1
합계	1	-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초과집행 지속문제(국방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방부의 인사정책지원 사업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로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국방부는 법률에 따른 장애인 군무원과 장애인 공무원 근로자 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6년도 군무원 채용계획 작성지침을 하달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별 장애인고용 미달 인원내 대한 신규 채용 직위를 발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방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편성액의 146.9%인 146억 3,10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장애인고용률이 계획 대비 여전히 미달하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결산내역(2020~2025)]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군무원	예산	-	2,741	4,153	6,324	6,324	8,457
	집행	-	3,088	4,017	6,526	8,809	11,047
공무직	예산	524	571	712	1,502	1,502	1,503
	집행	870	738	1,256	1,661	2,798	3,584
총 계	예산	524	3,312	4,865	7,826	7,826	9,960
	집행	870	3,826	5,273	8,187	11,607	14,631

국방부가 장애인 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집행액도 2020년 8억 7,000만원에서 2025년 146억 3,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편성예산 대비 초과집행도 지속되고 있으며, 집행률은 2021년 115.5%에서 2025년 146.9%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과집행 문제는 2024년 결산 등에서 시정요구된 바 있으나 2025년 기준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 신규 채용 직위 발굴’을 각 부대 등에 지시하고, 직위 발굴에 대한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2026년도에는 가산자격증 및 응시자격증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통한 임용준비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가 수년째 대두되어 오고 있다는 점, 장애인 고용률의 제고라는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달성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시적인 정책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장애인이 채용이 확대되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규모가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잠복결핵위탁검사 집행단가 불용 지속문제(병무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은 병역판정검사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서 사회복지무요원 등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4년 잠복결핵 위탁검사시 당초 예산 편성되었던 단가(16,000원)보다 계약단가(12,400원)가 낮게 형성되어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약단가가 예산 편성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오고, 그 차이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국회는 병무청은 향후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편성 시 단가 변동 추세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2026년 검사에 대한 용역 계약 체결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병무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잠복결핵검사의 낙찰률의 의미있는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낙찰차액의 감소는 사업규모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면밀한 계약단가 관리가 필요하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잠복결핵검사 계약단가 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인당 예산 편성 단가는 2022~2025년 16,000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5년의 경우 71.0% 수준에서 계약단가가 형성되었다. 이는 2024년 낙찰률 77.5%에 비해 더욱 낮아진 수치이다. 2026년 계약의 낙찰률은 71.3%로서, 202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의미있는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낙찰차액의 경우 2025년에는 9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00만원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는 1억 9,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결핵검사의 대상자 변경으로 수검자 규모가 감소하여 사업예산 자체가 전년대비 약 17.9% 수준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낙찰률의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잠복결핵검사 예산 및 낙찰차액 내역]

(단위: 백만원, 원, %)

구분	예산		낙찰액			낙찰차액
	예산액	1인당 단가	집행액	1인당 단가	낙찰률	
2022	4,069	16,000	3,995	15,570	97.3	22
2023	4,014	16,000	3,567	14,500	90.6	376
2024	3,688	16,000	2,838	12,400	77.5	830
2025	3,560	16,000	2,592	11,358	71.0	968
2026	639	33,000	447	23,520	71.3	192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실제 계약 단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낙찰차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68건으로 시정 5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53건이며, 이 중 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53건이며, 조치중 15건으로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제주 4·3 피해보상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등 3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	-	3	8	21	(1)	31	22	9
경찰청	-	-	1	1	12	-	14	11	3
소방청	-	-	1	1	6	-	8	8	-
인사혁신처	-	-	-	2	6	(1)	7	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8	-	8	6	2
합계	-	-	5	12	53	(2)	68	53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2	-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 사정리위원회	1	1	-
합계	3	1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제주 4·3 피해보상 연례적인 실집행부진(행정안전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제주 4·3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불용액 합계가 1,500억원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4년 집행률도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러한 실집행부진이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심사 인력이 불충분하여 보상금 심의가 지연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인력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등 보상금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주 실무위원회의 심사인력(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4명)을 보강하였으며(기존 2명→6명), 이후 보상금 심의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조치완료를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제주 4·3 피해보상 사업은 심사·지급 지연으로 2025회계연도에도 집행부진과 타 사업으로의 과다 이용이 반복되었다.

2025회계연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2,418억 7,700만원 중 418억 2,900만원 이용 감액하고 1,945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2.6.1.~'25.5.31.의 기간 동안 반기별로 신청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급신청을 받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상금을 균등하게 편성·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급지연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어 신청접수기한은 2026년 12월까지, 지급 완료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조정되었다.¹⁾

[제주 4·3 보상금 지급 계획]

(단위: 백만원, 명)

구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2.6.1~'26.12.31.	'22.6.1~'23.12.31.	'23.1.1~'23.6.30.	'23.7.1~'23.12.31.	'24.1.1~'24.6.30.	'24.7.1~'25.12.31.	'25.1.1~'26.12.31.
대상	15,088	2,117	2,500	2,795	2,663	2,714	2,299+α
결정	7,524	1,955	2,288	1,999	1,272	10	심의중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각각 470억원, 100억원, 288억원, 418억원의 보상금 예산이 미집행되어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에도 333억 2,900만원은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이용되었고, 85억원이 본부 인건비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1) 「4·3사건법」에 따르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5,000~9,000만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형벌의 정도에 따라 3,000~9,000만원이다.

[2022~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	불용
2022	181,010	△47,000	134,010	62,560	71,450
	· (이용) 제11호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 (불용) 4·3사건법 시행(‘22.4.12.), 신청 및 사실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심의기간이 부족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2023	193,554	△10,000	183,554	183,548	6
	· (이용) 6.27~7.27 호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2024	226,198	△28,800	197,398	197,398	-
	· (이용) 7.8~7.19, 9.19~9.21 호우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2025	241,877	△41,829	200,048	194,583	5,465
	· (이용) 7.16.~7.20. 호우피해복구비 부족 등에 따른 이용(333.3억원) · (이용) 11.20. 기관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85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같이 예산 과다편성과 지급절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의 과다한 이·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지급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실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급속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업무처리 속도를 고려하여 연내 지급 가능인원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2)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유입 적정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검토 필요(소방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데이터 유통·거래 및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과기정통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 사업 완료('22년) 이후 2023년부터 소방청이 위탁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 위탁운영 중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위탁운영 과업 미흡, 유상거래 규모 감소, 데이터 유통 증가율 저조 등이 지적되었다. 국회는 소방청이 소방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유통 활성화, 위탁운영 지속가능성 강화, 플랫폼 실질적 활용성 개선에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데이터 표준·품질 체계를 수립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25.6.13.)하였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소방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부 데이터에서 소방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유상거래 매출에서 공공재원 기반 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및 유통 활성화 측면에서 시정요구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신규 데이터셋은 2024년 639건에서 2025년 96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 322건, 무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 641건으로 유상·무상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에서는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227건)가 무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412건)에 비해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2025년에도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 대비 무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 비율이 2024년 1.81배에서 2025년 1.99배로 오히려 확대되어, 시정요구에서 지적한 유·무상 데이터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등록된 신규 데이터(963건)는 새롭게 발굴·도입한 신규발굴 데이터(699건)와 기존 데이터를 최신화한 갱신 데이터(264건)의 합으로, 국회가 요구한 소방분야 데이터 품질 제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규발굴 데이터(699건)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발굴 데이터 중 소방관련 카테고리(소방안전·소방산업·화

재안전성능 등)는 274건(39.2%)이나, 언론보도 및 소비분석 카테고리가 425건(60.8%, 각각 56.1%, 4.7%)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보도 카테고리에는 도박관련 사건사고, 비리사건, 지식범죄 데이터 등이, 소비분석 카테고리에는 카드결제 데이터 및 외식 배달 POS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일부 언론보도·소비분석 데이터가 직접적인 소방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구급수요, 행사·축제 대응, 사회재난 징후 분석 등의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현재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소방분야와의 관련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방분야 빅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양적 확대에 앞서 분야 관련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본 플랫폼을 통한 유상거래 총액은 2023년 2억 3,656만원에서 2024년 1억 1,730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 1억 5,840만원으로 2024년 대비 약 4,109만원 증가하였다. 다만 그 출처를 분석하면 실제 매출액 중 과기정통부 지원사업(NIA 출연) 기반 구매액이 1억 4,225만원(89.8%)을 차지하는 반면, 순수 민간 자발 거래 매출은 1,615만원(10.2%)에 불과하다. 유상거래 매출에서 공공재원 기반 구매 비중이 2023년 0%에서 2024년 43.5%, 2025년 89.8%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유상거래 매출에서 공공재원 비중이 늘고, 민간 자발거래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소방청은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소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유입·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주도 유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미흡(인사혁신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인사혁신처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2024년 결산 기준 누적된 잉여금 규모가 8,621억원에 달하였다.

국회는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주의)하고,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제도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하여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39억원 증가된 1,701억원을 반환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반환 예산 증액 요구 및 신속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더하여 2026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추진하여 수탁금 잉여액 이자수익의 반환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인사혁신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사업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결산 기준 누적 잉여금이 8,851억 원 수준에 이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탁금 잉여금의 반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22년도 결산심사 당시 과도한 수탁 잉여금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기관에는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해 정상 반환한 것과 달리 지자체 대상으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반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2025년은 산정액 대비 국가기관은 812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3,657억 원이 각각 과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2021~2025) 업무처리기준상 반환액·당해연도 예산확정액 비교]

(단위: 억원)

연도	반환대상 구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금액(A)	당해연도 예산 확정액(B)	차이 (B-A)
2021	국가	761	761	-
	지자체	1,580	1,580	-
	소계	2,341	2,341	-
2022	국가	774	774	-
	지자체	2,594	1,594	△1,000
	소계	3,368	2,368	△1,000
2023	국가	118	118	-
	지자체	2,326	1,304	△1,022
	소계	2,444	1,422	△1,022
2024	국가	395	395	-
	지자체	1,650	825	△825
	소계	2,045	1,220	△825
2025	국가	1,469	657	△812
	지자체	4,062	405	△3,657
	소계	5,531	1,062	△4,46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대여학자금 융자사업이 시작된 1981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된 학자금의 잔액이 누적되면서 2025년 현재 누적액이 2조 222억 원이고 기관으로 받은 대여학자금 수탁금의 누적액은 2조 9,074억 원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은 총 8,852억 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 도입 등의 사업환경을 감안하면 향후 학자금 대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학자금 대여액을 초과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수탁금 잉여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부 담 금	누적액	3,746,499	3,512,488	3,275,714	3,134,163	3,012,730
	수입액	135	55	608	534	859
	반환액	234,146	236,829	142,159	121,967	106,196
	(누적)잔액(A)	3,512,488	3,275,714	3,134,163	3,012,730	2,907,393
대 부 금	대부액	367,798	347,847	376,801	346,551	337,894
	상환액	607,029	559,893	530,549	494,038	466,191
	(누적)잔액(B)	2,663,820	2,451,774	2,298,027	2,150,540	2,022,243
잉여금(A-B)		848,668	823,940	836,136	862,190	885,15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부 수요 정체가 예상되어 잉여금 누적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상황임에도, 자체 업무처리기준 및 중기사업계획상 감축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반환금을 편성·집행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반환 이행에 일관성 없는 차등을 유지하는 것은, 8,852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재원이 국가·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못한 채 불필요하게 적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과 제도 운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중기사업계획상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반환금을 차질 없이 편성·집행함으로써 누적 잉여금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92건으로 시정 7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9건이며, 이 중 3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73건이며, 조치중 19건으로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세입 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 등 3건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	-	6	9	54	(2)	67	52	15
국가유산청	-	-	1	10	15	(1)	25	21	4
합계	-	-	7	19	69	(3)	92	73	1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1	1	-
합계	1	1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세입 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491억 8,400만원이 초과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192.7%였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0억 7,800만원이 초과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672.5%에 달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기타경상이전수입 369.3%, 기타재산이자수입 206.5%로 나타났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2024년에 328억원이 초과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29%였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세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에 39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다.

국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초과하는 등 세입 예산이 과소 계상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 규모 세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이자 및 정산반환금 규모, 전년도 결산액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과소 계상된 기타재산이자수입[4,715백만원('25년)→13,761백만원('26년)]과 기타경상이전수입[83,500백만원('25년)→100,203백만원('26년)]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세입 결산액이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세입 예산이 과소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의 경우 2022년 및 2023년에는 과소수납되었으나, 2024년 수납액이 25억 3,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86.8%였고, 2025년에도 수납액이 25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76.1%를 기록하였다.

[2022~2026년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22	843	843	51	51	-	-	6.0
2023	857	857	49	49	-	-	5.7
2024	883	883	2,533	2,533	-	-	286.8
2025	909	909	2,510	2,510	-	-	276.1
2026.5.	937	937	1,284	1,284	-	-	13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면허료 및 수수료의 2026년 예산도 체육지도자 관련 수수료 수납액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에도 초과수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체육지도자 관련 수수료를 고려하여 동 세목 예산을 적정 규모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세계잉여금이 매년 초과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5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407.8%였다.

[2022~202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22	10,845	10,845	31,327	31,327	-	-	288.9
2023	21,070	21,070	39,735	39,735	-	-	188.6
2024	15,102	15,102	27,332	27,332	-	-	180.9
2025	7,266	7,266	29,632	29,632	-	-	407.8
2026.5. ¹⁾	11,563	11,563	-	-	-	-	-

주: 1)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매년 하반기 징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아특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은 “순잉여(전전년도 세계잉여금 결산-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초과수입 전망+지출불용 전망”와 같은 산출식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데, 전망 대비 실제 초과수입 및 지출불용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특회계는 매년 세입이 초과수납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결산상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고, 이에 다시 전년도세계잉여금이 초과수납되어 세입이 연례적으로 초과수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세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부진 문제(문화체육관광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집행률은 평균 97.2%로 교부는 원활히 이루어졌으나, 지자체의 평균 실집행률은 33.9%에 불과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례적 이월과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95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센터 신규 선정 전 현장실사하여 지자체 사업준비성을 확인(‘25. 9월)하였으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미준수 지자체에 공모 평가시 감점을 부여(‘25. 10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및 집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선하였지만, 2025년도 사업시행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3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2025년에는 계획액의 99.1%에 해당하는 7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 교부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1,806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당해연도 실집행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

2025년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70%를 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센터별로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5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0개 센터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센터가 절반이 넘는 27개이고, 실집행액이 0원인 센터도 17개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2025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한 센터별 실집행내역의 경우, 122개소의 센터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센터가 83개, 실집행액이 0원인 센터가 31개이며, 전체 실집행률은 33.3%로, 계속사업 또한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 부지 확보 협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 설계 공모,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건축기획용역 진행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때문인데, 이는 문체부가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에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도 지속적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유산보호기금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국가유산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수입 구조를 보면 전체 수입 중 복권기금 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이 평균 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관람료 등 자체 수입의 비중은 평균 5.3%에 불과하다.

국회는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하여 '25년도 예산 편성 시 구조조정을 실시(일반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관리지원 △16억원 등)하였고, '23년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25년도 사업 규모를 축소(소규모 긴급 매장유산 조사지원 △43억원 등)하는 등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 정비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가유산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복권기금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이 과소하므로 자체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계획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체 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으며,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내부수입인 복권기금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복권기금 전입금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매년 복권수익금의 일부(법정비율 약 5%)를 전입받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으로 과거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 국가재정 건전화 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중단되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계획)
수입(A) ¹⁾	139,426	150,492	165,685	169,679	166,626	190,850
자체수입	5,487	9,849	7,346	17,068	13,641	10,866
입장료수입	2,954	3,787	4,259	4,132	4,290	5,000
기타	2,533	6,062	3,087	12,936	9,351	5,866
정부내부수입	133,939	140,643	158,339	152,611	152,985	179,984
복권기금전입금	92,947	140,643	158,339	152,611	144,815	170,646
기금예수금	40,992	-	-	-	8,170	9,338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916억원을 예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2018년 예수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81억 7,0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26년에는 2019년 예수금 93억 3,8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비중이 2025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6년 계획안 기준 전체 사업비의 6.9% 수준으로 과소한 편이라는 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자부담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고갈 등 기금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유산보호기금 연도별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기금사업비(A)	137,709	150,170	163,907	163,066	158,054	189,422
여유자금(B)	17,283	17,605	19,383	25,996	34,568	13,163
여유자금 비중(B/A)	12.6	11.7	11.8	15.9	21.9	6.9

주: 1. 2025년은 계획안 기준

2. 기금사업비는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규모

3. 여유자금은 기말잔액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입장료 수입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이관 및 규모 조정 등을 통해 기금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총 188건으로 시정 9건, 주의 28건, 제도개선 152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57건이며, 조치중 3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례적인 공사지연 문제’ 등 7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	-	-	5	55	-	60	52	8
농촌진흥청	-	-	-	3	11	-	14	10	4
산림청	-	-	-	8	29	-	37	28	9
해양수산부	-	-	9	11	44	(1)	63	58	5
해양경찰청	-	-	-	1	13	-	14	9	5
합계	-	-	9	28	152	(1)	188	157	3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례적인 공사지연 문제(농림축산식품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사업비를 편성하며,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하고 및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률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26년에는 공정률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 완료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2024년 11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착수되어 2025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설계기간이 33개월 순연('23.5.~'26.1.)되면서 착공 예정일이 지연되고, 총사업비가 9,940억원에서 1조 2,769억원으로 2,829억원(28.5%) 증액되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여 단계 및 사업장별로 필수 행정절차의 완료 시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락시장 3단계 사업은 2024년 11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착수되어 2025년 11월 완료되었다. 재검토의 주요 배경은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재검

토 결과 채소2동 실시설계 단가에 물가상승률 21.32%를 적용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철거비 추가,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공사비의 2%) 계상 등이 반영되었다. 그 결과 3단계 총사업비는 현행 3,124억원에서 4,826억원으로 1,702억원(54.5%)이 증액되었다.

[가락시장 3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단위: 억원)

구분	당초 계획(A)	재검토 결과(C)	증감(C-A)
공사비	2,914	4,571	1,657
시설부대경비	210	255	45
합계	3,124	4,826	1,7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총사업비 증가와 적정성 재검토 과정은 사업 일정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설계기간이 33개월 순연('23.5.~'26.1.)되면서 착공 예정일이 지연된 상황이고, 2031년 완공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가락시장 단계별 사업 추진 일정 계획 대비 실적]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기간	'09~'16	'17~'24	'22~'30.7.
공사기간	'11.6.~'15.2.	'21.2.~'24.11.	'27.3.~'30.2.(예정)
착공 예정일	'11.6.	'21.2.	'27.3.
실제 착공일	'11.6.	'21.2.	시기 미도래
완공 예정일	'15.1.	'24.5.	'3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 목표 대비 지연 현황]

구 분	당초 준공 목표	현재 준공 예정	지연 기간
가락시장	'31년	'34년 9월	약 3년 9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여 단계 및 사업장별로 필수 행정 절차의 완료 시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의 집행 저조 문제(농림축산식품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내역사업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저탄소영농활동에 필요한 저메탄사료가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내 출시되지 못하면서 사업의 기본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집행률은 0.5%에 불과하고, 젖소의 저메탄사료 급이 실적은 전무하였다.

국회는 집행 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기본여건 미비로 인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 개편을 통해 분뇨처리방식 개선(한·육우, 젖소)을 신규 추가하고, 친환경 사료 전환 축종을 확대(돼지+한·육우, 산란계)하였으며, 이행 편의성 도모(증빙 월별→분기)와 함께 2026년 지원단가 상향(저메탄사료 2.5만원→5.5만원/두, 분뇨처리방식 개선(강제송풍 500원→2,600원, 기계교반+강제송풍 1,300~1,500→5,500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조치를 완료('26.1.)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시범사업은 2025년에도 당초 계획액 95억 2,700만원 대비 실집행액은 17억 700만원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5년에도 당초 계획액 95억 2,700만원 중 70억원이 친환경농업 직불로 변경 집행된 후 22억 1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7억 700만원에 그쳐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은 17.9%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계획액 대비 교부액 자체가 크게 부족하고 교부된 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중적 집행 부진이 2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2025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 사업 실집행]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이월액 예산 현액	제외 집행액 (C)			
2024	축산환경관리원	318	318	318	-	318	318	318	318	-	-	100
	지방자치단체	4,625	497	497	-	497	25	497	25	317	155	0.5
2025	축산환경관리원	533	533	533	-	-	533	533	533	-	-	100
	지방자치단체	9,527	2,527	2,201	317	2,518	1,781	2,201	1,707	28	709	17.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활동별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저메탄사료의 경우 한육우 0.15만두에 대해 3,800만원이 지급되었을 뿐 젓소는 이행 실적이 전무하였고, 질소저감사료는 돼지 27.9만 두(13억 9,500만원)와 산란계 133.6만 마리(2억 6,700만원)에 집중되었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교반송풍·강제송풍 합계 3.2만톤에 대해 3,40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 사업 연도별 이행실적]

(단위: 만원, 마리, 백만원)

연도	활동	축종	단가	이행물량	지급액
2024	질소저감사료	돼지	0.5	0.5만 두	25
2025	저메탄사료	한육우	2.5	0.15만 두	38
		젓소	5	-	-
	질소저감사료	한육우	1	-	-
		돼지	0.5	27.9만 두	1,395
		산란계	0.02	133.6만 마리	267
	분뇨처리방식 개선	한육우(교반송풍)	0.13	1.0만 톤	13
		젓소(교반송풍)	0.15	0.9만 톤	14
		한육우(강제송풍)	0.05	1.0만 톤	5
		젓소(강제송풍)	0.05	0.3만 톤	2
	소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실집행 저조의 원인은 농가의 저메탄사료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질소저감사료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저메탄사료 단가의 현실화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질소저감사료의 생산성 영향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농가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농림축산식품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역량강화 및 입양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주민 동의 등 사업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방지 등을 위해 사업 규모별 사업기간과 연부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민원으로 인한 중도 포기 등 장애요인 완화를 위해 주민친화형 친수공간(개방형 훈련시설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은 4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 전년도 실집행 실적과 이월금 보유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수를 나누어 교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2~2025년간 실집행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현액 92억 9,1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1억 4,400만원(실집행률 23.1%), 2023년 예산현액 109억 7,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0억 1,100만원(실집행률 36.5%), 2024년 예산현액 119억 4,7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6억 8,200만원(실집행률 39.2%), 2025년 예산 123억 8,400만원 중 실집행액은 60억 6,200만원(실집행률 49.0%)으로 나타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 규모 또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월 규모를 보면 2023년 66억 2,400만원, 2024년 67억 1,500만원, 2025년 52억 1,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혼약의 40~6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다.

[2022~2025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4,693	4,693	4,693	4,693	4,598	9,291	2,144	5,793	1,354	23.1
2023	5,841	5,841	5,186	5,186	5,793	10,979	4,011	6,624	344	36.5
2024	5,623	5,623	5,323	5,323	6,624	11,947	4,682	6,715	550	39.2
2025	5,643	5,643	5,643	5,643	6,741	12,384	6,062	5,219	1,103	4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추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 전년도 실집행 실적과 이월금 보유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수를 나누어 교부할 필요가 있다.

(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산림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은 「산림자원법」 제5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자금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녹색자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되고 있어, 녹색자금은 그 수입 및 지출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및 국회 재정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회는 녹색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사업비 집행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전산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여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녹색자금의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모든 집행내역을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검증 및 정산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산림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사업을 국가 재정 외로 운용하고 있어, 재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는 재정 전반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동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이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런데 산림청은 국가재정인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받은 녹색자금을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 심의기관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집행하는 등 동 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고 있다.

녹색자금은 자금 집행 이후의 소관 상임위 사후 보고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국회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고,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 재정인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 또한 다른 재정 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동 자금을 국가 재정 외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산림청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자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의 보조금 법령에 부합한 집행 필요(해양수산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의 실적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예산 6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미집행 이월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현액 119억 4,000만원 중 95억 1,000만원을 교부하여 16억 1,700만원을 실적집행(16.2%)하였다.

사업장별로 지방비 미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민원 대응 및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전체 편성 보조금 중 79.9%를 교부하였고, 대부분이 이월되었다.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이다.

국회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효율화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실적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 「보조금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하였다.

2023년에는 교부된 국고 보조금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4년 예산현액 대비 16.9%가 실집행되었으며,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7%이었다.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면서 지자체 단계에서 2023년 4억 8,000만원, 2024년 82억 9,900만원, 2025년 143억 7,800만원의 대규모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2024년과 2025년도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실집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지자체에 교부하였고, 2025년도에 교부현액의 97.3%를 이월하였다.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보조금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적정한 국가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 그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대규모 이월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의 수검실적 저조 문제(해양수산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을 보면 2022년 39.6%, 2023년도 60.4%, 2024년도 예산 16억 8,7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7.9%)되어 재원 운영의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의 수검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검진병원('24년 29개소 → '25년 30개소) 확대 지정, 병원선 및 이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검진 적극 추진 및 지역설명회(2회), 위

크숍(4월), 현장점검 및 홍보(31회) 등 실시함. 또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1,537명 검진완료('25.12.29)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대비 실제 수검 인원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여 사업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실제 수검 실적 등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검 연령을 상향(45 → 51세 이상)하였고, 이에 따라 검진 대상 인원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수검 목표치를 11,764명으로 대폭 높이고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5배(16억 8,700만원) 증액 편성했으나, 실제 수검률은 11.5%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수검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과거 실적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고, 그 결과 실제 수검 인원은 1,537명에 그쳤으며, 수검률은 18.6%, 실집행률은 43.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수검률이 저조함에 따라 예산 집행 실적 또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실집행 실적이 39.6%, 2023년 60.4%,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집행률도 40% 내외에 불과하여 재원 운영의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대비 실제 수검 인원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여 사업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실제 수검 실적 등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준수 노력 필요(해양경찰청)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상 도입 예정 대수와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기본계획상 함정 중 중형함정 독도전담 1척, 예인정 1척, 대형함정 노후대체 1척, 형사기동정 노후대체 2척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았고, 기본계획상 반영되지 않은 고속단정 7대 노후대체는 예산상 반영되어 도입 중이었다.

항공기는 기본계획상 대형헬기 및 터보프롭 각 1대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았고, 노후 헬기 대체도 당초 3대가 목표였으나 1대만 예산상 반영되어 도입 중이었다.

국회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및 전문기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경찰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의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상 도입 예정 대수와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기본계획에는 대형함정 2척(서해전력증강 예인정 1척, 대형함정 대체 1척), 100톤 대체 2척, 형사기동정 대체 2척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에 미반영되었고, 반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형함정(단속전담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8척 등은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 도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기는 기본계획상 대형헬기 및 터보프롭 각 1대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차기(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함정 및 항공기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10건으로 시정 3건, 주의 21건, 제도개선 90건이며, 이 중 4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95건, 조치중 15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의 참여자 모집전략 재검토 필요’ 등 5건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부	-	-	3	5	38	(2)	44	40	4
지식재산처	-	-	-	1	14	-	15	14	1
중소벤처기업부	-	-	-	15	38	(2)	51	41	10
합계	-	-	3	21	90	(4)	110	95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의 참여자 모집전략 재검토 필요(산업통상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은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혈액, 소변 등 검체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며 공공데이터와 라이프로그¹⁾

1) 라이프로그(lifelog)란 ‘삶의 기록’을 뜻하는 말로, 취미, 건강 등에서 생성되는 개인 생활 전반의 기록을 정리,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를 수집·연계하여 R&D 인프라로서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및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2024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모집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한편 참여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였다.

국회는 구체적인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참여자 모집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R&D 특정평가를 추진하였고,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515억, 4개 부처 합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산업통상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참여자 모집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희귀중증질환자 모집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참여자 모집 지연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등 4개 부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을 통해 2024~2025년 동안 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국민 총 20만 6,0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말 기준 12만 933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고, 2026년까지 참여자 모집 누적 목표는 39만 8,000명이나, 6월 4일 기준 18만 277명을 모집하여 4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4~2025			2024~2026			~2027	~2028
	목표 (A)	실적 (B)	달성률 (B/A)	목표 (A)	실적 (B)	달성률 (B/A)		
희귀질환자	8,800	3,263	37.1	16,000	4,704	29.4	24,000	32,000
중증질환자	36,000	7,005	19.5	70,800	12,644	17.9	104,800	138,800
일반인	161,200	110,665	68.7	311,200	162,929	52.4	446,200	581,200
합계	206,000	120,933	58.7	398,000	180,277	45.3	575,000	752,000

주: 2024~2025년 실적은 2025년 12월말 기준, 2026년 실적은 2026년 6월 4일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6년 6월 4일 기준 전체 참여자 모집 목표 달성률은 45.3%인데 비해, 희귀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모집 목표 달성률은 각각 29.4%, 17.9%로 희귀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목표 달성률은 더욱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모집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산업통상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인당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부분 모집인원에 대한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었으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료참고용 보고서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신규사업 기획 등 통해 2027년부터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참고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참여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모집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희귀·중증질환자 모집이 구조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미달성 목표를 단순 이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질환군별 오믹스 데이터 구축은 희귀·중증 질환자 모집이 필수적으로, 이들에 대한 모집 실적이 저조할 경우 데이터의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추구(R&D) 사업의 참여자 모집 지연 원인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이나 추진체계 및 참여자 모집 방식 개선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특화단지 지원사업 다년도 예산지원 방안 마련 필요(산업통상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산업통상부는 2024회계연도에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 사업과 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 사업을 단년도로 지원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공사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단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예산지원 종료 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움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다년도로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별로 특화단지추진단(지자체) 및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재정지원 이후에도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업특성상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은 곤란한 상황이나, 필요시 새로운 단년도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이며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사업을 단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조치완료를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기반시설 공사의 일부 비용만을 지원한 후 사업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국비 지원에 따른 성과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사업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추경 포함 1,42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5년 사업 추진 결과 5개 사업지 중 포항은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 공사 인허가를 받지 못해 예산액 119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새만금은 기업들의 투자취소 및 철회 등으로 인해 172억

9,000만원 중 83억 6,600만원을 감액 전용한 후 예산 현액 89억 2,400만원 중 18억 8,100만원만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0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2025년 지원대상 사업지별 집행실적]

구분	이차전지				반도체		합계
	①포항	②청주	③새만금	④울산	⑤용인	⑥평택	
예산액	11,930	5,791	17,290	6,930	49,930	49,930	142,221
이전용	-	-	△8,366	-	-	-	△8,366
집행액	-	5,791	1,881	6,930	49,930	49,930	114,892
불용액	11,930	-	7,043	-	-	-	19,04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청주, 울산, 용인, 평택 지역을 살펴보면 청주 사업지의 경우 2024년에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되었으나, 울산 사업지는 2028년 준공 예정이고, 용인 사업지는 2035년 준공 예정이며, 평택 사업지의 경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상추진 사업지의 추진경과 및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청주	울산	용인	평택
사업기간	2024~2026	2025~2028	2024~2035	2023~2026
사업규모	154kV 선로 4km 및 전력맨홀 10개소 설치	도로확장 L=1.9km	폐수처리시설 확충	2단지 변전소 확충
지원대상	LG에너지솔루션	울산광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총사업비/국비	146.5/58.61	140/70	36,102/500	2,206/500
추진경과	착공('24.10.) →준공('26.4.)	착공('25.7.) →준공('28.)	착공('25.1.) →준공('35.)	착공('24.1.) →준공('26.12.)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2)에 따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25년 지원된 청주, 울산, 용인, 평택 사업 역시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기반시설 공사의 일부 비용만을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최종 사업 성과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공사 진척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 국비 지원에 따른 성과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년도 사업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³⁾

(3)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등(지식재산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지식재산처는 2024회계연도에 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금(58-581)’이 아닌 ‘과태료(56-563)’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결정액 29억 7,200만원 중 29억 4,200만원(99%)이 미수납 상태인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 과목이 아닌 ‘가산금’ 과목으로 편성하고,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세입항목(56-563)에 포함되었던 가산금 징수결정액을 가산금 세입항목(58-581)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장기 체납자(2016~2025년)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통지를 실시함에 따라 2025년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3.3배 증가한 1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고시 제2024-140호)」

제4조(지원방법) ①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사업 특성상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성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국세청과 협력하여 미납 과태료 수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지식재산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납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의무연수의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현행 변리사에 대한 관리·의무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미수납액은 2023년 24억 8,500만원에서 2024년 29억 4,2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29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수납액이 1억 1,200만원으로 2023년(4,200만원)이나 2024년(3,000만원)에 비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2025년 과태료·가산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연도	징수결정			수납액	미수납		불납결손액
	당해	이월	계		금액	건수	
2023	-	-	42	42	2,485	491	-
2024	487	2,485	2,972	30	2,942	616	-
2025	148	2,972	3,980	112	2,978	505	-

자료: 지식재산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2025년 납부독촉 등 징수활동(1,088건)을 전년(169건) 대비 6배 이상 늘려 수납액도 소폭 향상되었으나, 변리사 의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이수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변리사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등 규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의무연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갱신) 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684호)」이 2025년 4월 발의되었으며, 2026년 5월 현재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684호)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변리사 등록 유효기간	-	5년
변리사 등록 갱신	-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등록 또는 등록 갱신 거부	금고 이상 실형 등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 거부	공무원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 등 조항, 변리사회 가입 의무 위반 조항,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미납 조항 등 신설, 등록 갱신 거부 신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와 함께 과태료 및 가산금 미수납 문제와 관련하여 2026년 국세청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통해 수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식재산청은 설명하고 있다.⁴⁾

그러나 의무연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변리사 의무연수의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즉,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에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도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020헌바21·56병합).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인 변리사를 단일한 변리사회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편, 법 제정 전에는 부처 간 업무협약을 근거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사 건 2020헌바21, 56(병합)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청구인 유○○ 외 5명

이 사건은 변리사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합니다)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10.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자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따라서 지식재산청은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 수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연수의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현행 변리사에 대한 관리·의무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4)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중소벤처기업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기술보증 대위변제 사업 추진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 등 유동성 지원 확대에 따라 2020-2022년 보증 사고율(2.5~3.4%)은 낮게 유지되었으나, 최근 복합위기 지속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보증 사고율은 각각 4.2% 및 4.7%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피보증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어 사고율 급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보증 리스크 목표 관리, 리스크 모형 고도화 용역 수행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특례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25.12.31)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4년 대비 2025년 기술보증 사고율이 0.5%p 증가하였고, 2024년 대비 2025년 기술보증기금의 부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고도화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이 아직 기술보증 업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

2025년 기술보증 사고금액은 1조 5,563억원으로 2024년 1조 3,473억에 비해 증가하였고, 보증잔액 증가율 대비 사고금액 증가율이 더 큼에 따라 사고율은 2024년 4.7%에서 2025년 5.2%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기술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배)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보증	48,480	78,208	49,276	42,638	60,957	55,156	64,006
보증잔액(A)	218,052	254,453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99,242
사고금액(순증)(B)	9,848	8,611	6,693	7,197	11,832	13,473	15,563
사고율	계획	4.8	4.8	4.5	4.8	4.0	4.6
	실제 (B/A)	4.5	3.4	2.5	2.7	4.2	4.7
기본재산(C)	15,570	21,100	29,176	33,670	34,424	33,174	30,638
운용배수(A/C)	14.0	12.1	9.0	7.9	8.1	8.6	9.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기술보증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대위변제발생액(D+E)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여 1조 5,677억원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말 보증잔액	A	254,453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99,242
연말 사고잔액	B+C-D	2,834	2,909	3,528	4,544	5,081	5,293
전기 보증사고잔액	B	2,359	2,834	2,909	3,528	4,544	5,081
당기 보증사고순증액	C	8,611	6,693	7,197	11,832	13,473	15,563
대위변제 보증해지액	D	8,136	6,618	6,578	10,816	12,936	15,351
대위변제 보증해지율	D/A	3.2	2.5	2.5	3.9	4.5	5.1
대위변제발생액	D+E	8,254	6,702	6,678	11,058	13,248	15,677
종속채무 등	E	118	84	100	242	312	326
대위변제 발생률	(D+E)/A	3.2	2.6	2.5	4.0	4.7	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결과 보증공급 및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및 대손상각비 증가 등이 기금 부채 증가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술보증기금 재무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5년말(A)	2024년말(B)	증감(A-B)
자산	총 자산	49,803	49,374	429
	총 부채	18,428	15,614	2,814
	순자산	31,375	33,760	△2,385
재정 운영	총수익	15,266	14,071	1,195
	총비용	19,899	15,704	4,195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4,633	△1,633	△3,000

주: 1. 총 부채의 증가는 보증료 관련 선수수익 증가(+233억원)와 보증잔액·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2,633억원) 등에 기인함

2. 총 비용의 증가는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대손상각비 증가(+2,362억원) 및 보증잔액·보증사고 증가 등에 따른 대위변제준비비 증가(+1,258억원) 등에 기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더 나아가,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재구축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2026년 전산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함에 따라 고도화된 모형을 아직 기술보증 업무 등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의 미도입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사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부실 예측력 제고에 따른 기업 선별력 강화로 보증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보증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적정 수준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71건으로 주의 21건, 제도개선 155건이며, 이 중 5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34건이며, 조치중 37건으로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의 법정 지원을 미준수 문제’ 등 5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	-	-	19	114	(5)	128	97	31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15	-	16	12	4
질병관리청	-	-	-	1	26	-	27	25	2
합계	-	-	-	21	155	(5)	171	134	3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1	1	-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
합계	2	2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의 법정 지원을 미준수 문제(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한도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은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1.5~12.1%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법정 기준(14%)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제시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재정당국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5년 대비 1,100억원 증액된 12.7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 편성 시에도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 재정 지원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026년 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은 12.7조원으로 전년(12.6조원) 대비 1,100억원 증액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의 경우 대체로 관련 법령상 한도액인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지원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일반회계 지원분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1.9% 수준에 그쳐 법정지원율(14%)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였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현황(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억원, %)

구분		수입 예상액		지원액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 (D=C/A)	부담금 수입예상액 대비 지원율 (E=C/B)
		보험료 (A)	담배부담금 (B)	예산	결산(C)		
국민건강 증진기금	2020	639,260	28,924	18,801	18,801	2.9	65.0
	2021	664,901	29,487	19,167	19,167	2.9	65.0
	2022	727,540	27,922	18,149	18,149	2.5	65.0
	2023	761,822	28,013	18,208	18,208	2.4	65.0
	2024	846,022	29,264	19,022	19,022	2.3	65.0
	2025	875,646	30,587	19,882	18,701	2.1	61.1
	2026	909,134	29,771	19,351	미정	2.1	65.0

주: 1.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의 경우, 2020년 이후부터는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 한도 기준을 달성하고 있음

2. 2025년의 경우, 담배부담금 수입이 예상액 대비 감소하여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지원 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 %p)

구분		보험료수입 예상액(A)	지원액 (B)	지원율 (C=B/A)	법정지원율 대비 미달 비율
일반회계	2020	639,260	73,482	11.5	2.5
	2021	664,901	76,554	11.5	2.5
	2022	727,540	86,843	11.9	2.1
	2023	761,822	91,494	12.0	2.0
	2024	846,022	102,636	12.1	1.9
	2025	875,646	106,211	12.1	1.9
	2026	909,134	107,820	11.9	2.1

주: 법정지원율 대비 미달 비율은 법령상 기준(14%) 대비 미달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일반회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6년 기준 1조 9,45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하며, 최근 7년간(2020~2026년) 법적 지원 기준에 미달한 금액의 총합은 11조 4,365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 재정 관련 국고지원금과 법적 기준 준수금액 비교(2020~2026년)]

(단위: 억원)

구분	일반회계 지원 금액 (A)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의 지원 금액 ¹⁾ (B)	지원금 법적 기준 미달금액(B-A)
2020	73,482	89,496	16,014
2021	76,554	93,086	16,532
2022	86,843	101,856	15,013
2023	91,494	106,655	15,161
2024	102,636	118,443	15,807
2025	106,211	122,590	16,379
2026	107,820	127,279	19,459
합 계	645,040	759,405	114,365

주: 1)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의 지원 금액은 연도별 건강보험료 수입 예상액에 법정 지원율(14%)을 곱한 금액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특히, 2024~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역·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개혁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약 8.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2025년 결산 시 건보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폭이 전년 결산 기준 1조 7,244억원 대비 1.2조원 감소한 4,99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2024~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소계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상진료체계 지원	15,146	7,099	22,245
	수련병원 선지급 ¹⁾	14,844	-	14,844
	소계	29,990	7,099	37,08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기능강화지원 I	1,868	14,377	16,245
	기능강화지원 II	-	1,846	1,846
	성과평가지원	-	3,594	3,594
	소계	1,868	19,817	21,685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7,602	10,664	18,266
	수요부족 대응 인프라 유지 지원	3,471	4,036	7,507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448	1,168	1,616
	소계	11,521	15,868	27,389
총 계		43,379	42,784	86,163

주: 1) 수련병원 선지급은 '25.4~12월까지 매월 요양기관 청구급여비에서 균등 상계하여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일자리 사업 대기 수요 해소 및 전담인력 처우개선 미흡(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집행 내역 등을 살펴보면, 공익활동형 사업의 대기자가 25만 1,0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 충당을 위해 52억 원이 전용(감)되는 등 연례적 전용재원으로 기능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공익활동형 단가가 낮고 사업 중도포기율이 11.5%에 달하며,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급여로 전담인력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국회는 고령화 시대 대기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자체집행 비율을 높일 것, 공익활동형 활동비 단가 및 대기수요를 개선할 것, 그리고 합리적 급여체계 마련을 통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타 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단가 인상 및 사업량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안내하는 등 전담인력 처우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예산 수반 없는 지침 개정으로 전담인력 처우개선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전담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실질적인 인건비 총액 예산 증액 없이, 운영 지침상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선에서

조치를 갈음하였다. 이는 재원 확보의 책임을 지자체나 수행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예산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25만 명이 넘는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구체적 재원 확보 성과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단가 인상과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함'이라는 선언적 문구로 조치를 완료 처리하였다. 실질적으로 2026년 예산에 대기 수요를 얼마나 추가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적 성과나 로드맵이 결여되어 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연 및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미흡(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은 당초 10개소를 목표로 2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5개소만 설치되어 14억 원만 집행되었고, 운영비 예산도 433억 3,100만 원 중 28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다. 또한, 거점 심리치료센터 지원 인력은 지역별 아동 인구나 사례 건수 등 수요와 무관하게 대부분 3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6.2%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거점 심리치료센터 인력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재조정할 것, 그리고 돌봄 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단가 현실화 및 인건비 제고를 계속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2026년 내)이며,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배치 기준 조정을 검토(2026년 내)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건비 준수율은 2024년 96.2%에서 2026년 98.4%로 상향하여 지속 노력 중이라고 조치 현황을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핵심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사안을 구체적 계획 없이 ‘검토’로 사실상 문제를 이월하여 국회 지적사항의 실질적 개선이 부족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가 지연되고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국비 지원 단가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보조율 상향이나 단가 인상 방안 없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현장 수요와 괴리된 인력 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되거나 학대 건수가 많은 지역의 심리지원센터 정원이 타 지역과 동일하게 3명으로 묶여 있는 행정 편의적 관행이 지적되어 일부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원 조정이 있었으나 종합적인 조정 정원 규정 개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역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유예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리치료 병목 현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4)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¹⁾에 의거하여 2022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내에서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실적은 344kg으로, 전년 대비 27%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 대상 지역의 무리한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범위는 거점약국 100개소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이 사업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행 사업 구조상 마약류 의약품 반납을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거·처리 수행 약국, 도매업체 등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므로 자발적 반납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 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거점약국 및 환자·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참여 약국 수 확대, 홍보 강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수거·폐기 사업 대상 확대, 실태조사 실시 등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26년 관련 내역사업 예산을 전년 2억 3,1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한 3억 9,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참여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전년 대비 2025년 수거 실적도 일부 증가하였으나, 참여약국 수가 전국 100개소로 제한되어 있고 전국 개설 약국 대비 참여 비중도 0.4%에 불과하여 사업 성과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을 통한 연도별 마약류 수거·폐기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555kg, 2023년 1,269kg, 2024년 344kg, 2025년 520kg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2025년 수거량은 2024년 344kg 대비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2023년 1,269kg과 비교하면 여전히 4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참여약국 및 수거 실적]

(단위: 개, kg)

구분	기간	지역	참여약국	수거량
2022	7~11월	경기도	99	555
2023	5~12월	경기도(부천시)	100	1,269
2024	6~12월	경기도(부천시), 6대 광역시 (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광주)	100	344
2025	5~12월	경기도(부천시, 수원시), 전주시, 6대 광역시 (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광주)	100	520
2026	5~12월	서울특별시, 경기도(부천시, 수원시), 전주시, 6대 광역시 (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광주)	100	(수거 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는 2025년에 종합병원 연계 안내, 환자 대상 홍보, 에코백 제공 등 일부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약국 수가 매년 100개소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업 실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3년 경기도 부천시, 2024년 경기도 부천시 및 6대 광역시, 2025년 경기도 부천시·수원시, 전주시 및 6대 광역시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였다. 반면, 참여약국 수는 2022년은 99개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각 연도별 100개소로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개설된 약국은 총 25,688개소이나, 동 사업에 참여한 약국은 100개소로 전체 약국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별로도 일부 지역에만 참여약국이 분포하고 있어 잔여 마약류를 보유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납 거점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국 개설 약국 대비 사업 참여약국 현황]

(단위: 개소, %)

지역	개설 약국(A)	사업 참여약국(B)	비중(B/A)
서울	5,851	9	0.15
부산	1,732	9	0.5
대구	1,422	9	0.6
대전	797	14	1.8
인천	1,318	9	0.7
광주	740	11	1.5
울산	443	10	2.3
세종	163	-	-
경기	6,019	24	0.4
강원	714	-	-
충북	743	-	-
충남	1,008	-	-
전북	1,004	5	0.5
전남	847	-	-
경북	1,145	-	-
경남	1,412	-	-
제주	330	-	-
합계	25,688	100	0.4

주: 2026년 3월 심평원 약국 자료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동 사업은 환자(또는 보호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거주지나 의료기관 인근에서 손쉽게 반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와 같이, 참여약국의 비중이 전체 약국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방치된 마약류 회수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여약국 확보가 어려운 주요 원인은 제한적인 예산과 약국의 업무 부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한 약국은 마약류 처방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및 사업 안내, 잔여 마약류 반납 접수, 별도 보관, 도매업자 또는 운송업체 인계 등 실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는 일반 폐의약품과 달리 취급·보관

및 인계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참여약국에는 일정한 책임과 관리 부담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참여약국에 지급되는 수당은 개소당 월 1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약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납 유인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잔여 마약류를 반납하는 환자에게 에코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홍보 물품 제공만으로는 환자의 자발적 반납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 증액을 통해 참여약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참여약국에 대한 취급·관리비용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의 반납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단순 홍보 물품 제공을 넘어 반납 편의성 제고, 의료기관 처방 단계에서의 안내 강화, 지역 약사회·보건소와 연계한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²⁾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권역별 추진 지연 개선 필요(질병관리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및 재유행감염병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 등의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감염병동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진행 현황을 보면, 호남권 조선대병원은 공모 후 공사를 착공하였고, 충청권은 조달청 중간재설계 적정성 재검토('25.7.~) 중이며, 경남·경북

2) 예를 들어, 잔여 마약류를 반납한 환자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타민·음료 등 참여약국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제공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비용을 약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도입할 경우에는 지원 한도와 대상 품목, 비용 정산 방식, 중복 수령 방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예산을 통해 “방치된 마약류 현황 파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 중(의약품정책연구소, 계약기간: 2026.3.6.~9.2.)이므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권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준비중이고, 수도권은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실집행 실적을 보면 공사비 47억 4,700만원, 감리비 4억 6,5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등 예산현액(241억 600만원)의 21.7%인 52억 2,400만원만 집행되었다.

국회는 신종감염병, 재유행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며, 당해연도에 원활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예측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교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그간 관계부처(기획예산처·조달청 등) 및 병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절차 이행 등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⁴⁾이며, 권역별 구축사업 진척율, 간접보조사업자(권역병원) 기준 예산 이월액 등을 종합·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 중(2024~)에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질병관리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 및 반복적인 이·불용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역별 사업 지연 요인 및 경복권 부지 중복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추진된 2017년부터 2025년 까지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주체 기준 실집행률이 2024년 11.4%에서 2025년 69.2%로 개선되었다. 다만 이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에 따른 공사비 집행 증가의 영향으로 보이며, 전체 기간의 연평균 실집행률은 약 12% 수준에 그쳐 여전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2017~2025년 동안 발생한 불용액은 총

4) (호남권) 공사착공('24.6) 후, 공정을 향상('25.1월 9.1% → 26.3월 43.3%) (충청권) 중간 재설계 완료('25.6) → 조달청 적정성 재검토 완료('25.7~'25.12) (수도권) KDI 타당성재조사 완료('25.11)

775억 4,400만 원에 달하는 등 예산 편성 대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5년도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7	1,400	1,400	0	-	-	-	-	-	-	-
2018	2,822	2,822	2,822	2,822	-	2,822	0	2,822	0	0.0
2019	7,253	7,253	7,253	7,253	2,822	10,075	24	10,048	3	0.2
2020	3,860	8,396	8,396	8,396	10,048	18,444	930	15,649	1,865	5.0
2021	45,858	45,858	45,858	45,858	15,649	61,507	2,901	52,209	6,397	4.7
2022	26,604	26,604	26,604	26,604	52,209	78,813	2,286	72,338	4,189	2.9
2023	18,697	18,697	12,726	12,726	72,338	85,064	2,253	39,286	43,525	2.6
2024	6,388	6,388	6,388	6,388	39,286	45,674	5,227	18,882	21,565	11.4
2025	53	53	53	53	18,882	18,935	13,103	5,832	-	69.2

자료: 질병관리청

권역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2023년 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4년 4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2024~2025년 실집행액이 증가하였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충청권과 경남권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미흡한 상태이며, 경북권은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가 2023년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설계 단계에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실집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실집행이 없는 상태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호남권	예산액	1,400	2,822	7,253	3,860	8,430	5,036	12,726	6,388	-	13,703
	예산현액(A)	-	2,822	10,075	13,908	19,543	17,326	26,192	24,106	18,882	-
	실집행액(B)	-	-	24	930	856	27	177	5,224	13,102	-
	집행잔액(A-B)	-	2,822	10,051	12,978	18,687	17,299	26,015	18,882	5,780	-
충청권	예산액	-	-	-	2,268	17,580	5,790	2,218	-	-	-
	예산현액(A)	-	-	-	2,268	19,848	24,729	23,370	5,790	-	-
	실집행액(B)	-	-	-	-	909	1,003	1	1	-	-
	집행잔액(A-B)	-	-	-	2,268	18,939	23,726	23,369	5,789	-	-
경남권	예산액	-	-	-	2,268	17,580	5,790	2,218	-	53	-
	예산현액(A)	-	-	-	2,268	19,848	24,502	23,316	5,790	53	52
	실집행액(B)	-	-	-	-	1,136	1,186	1	1	1	-
	집행잔액(A-B)	-	-	-	2,268	18,712	23,316	23,315	5,789	52	-
경북권	예산액	-	-	-	-	2,268	7,720	1,502	-	-	-
	예산현액(A)	-	-	-	-	2,268	9,988	9,918	7,720	-	-
	실집행액(B)	-	-	-	-	-	70	2,074	1	-	-
	집행잔액(A-B)	-	-	-	-	2,268	9,918	7,844	7,719	-	-
수도권	예산액	-	-	-	-	-	2,268	33	-	-	3,457
	예산현액(A)	-	-	-	-	-	2,268	2,268	2,268	-	-
	실집행액(B)	-	-	-	-	-	-	-	-	-	-
	집행잔액(A-B)	-	-	-	-	-	2,268	2,268	2,268	-	-
집행잔액 합계		-	2,822	1,0051	17,514	58,606	76,527	82,811	40,447	5,832	-

주: 1. 국비 기준

2.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 사업은 2024년도 집행잔액을 2025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 반납 처리하였음.

3. 2026년 3월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아울러,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2025년 12월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조정 과정에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정 부지 내에 교육부 국고지원 사업(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부지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경북권 의견수렴, 법률자문 및 현장조사(2026.1~3)를 실시한 결과, 병원 내부 부서 간 협의·소통 미흡으로 관련 절차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타 부처 사업에 참여·선정되면서 부지 중복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부지 중복 문제는 타부처(교육부) 사업 추진⁵⁾ 과정에서 부지 활용 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향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시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및 타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총사업비 협의·설계 적정성 검토 등 단계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과 이·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질병관리청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21.7) 이후 교육부 사업 신청 및 선정('23~)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93건으로 시정 7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160건이며, 이 중 15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39건, 조치중 54건으로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등 6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	4	28	93	(8)	117	83	34
기상청	-	-	-	2	10	(1)	11	10	1
고용노동부	-	-	3	11	57	(6)	65	46	19
합계	-	-	7	41	160	(15)	193	139	5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고용노동부	1	1	-
합계	1	1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배정 예산 3,700억 4,100만원은 전액집행하였으나, 지자체로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을 보면, 교부현액 5,078억 800만원 중 3,209억 9,100만원만 실집행되었고 1,818억 8,900만원은 이월, 49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 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자체별 실집행률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율편성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후상수도가 과소투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관리 및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였고, 사업조건을 유연·개방적으로 완화하여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수도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관리 및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제 집행률은 2024년 70.3%에서 2025년 63.2%로 낮아지는 등 집행

부진 문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 회계연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078억 800만원 중 3,209억 9,100만원만 집행하였고, 1,818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 2,8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준 실집행률은 6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최근 3년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	집행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2023	393,436	393,436	391,876	391,876	95,130	487,006	326,864	157,703	2,439	67.1
2024	405,490	405,490	380,490	380,490	157,703	538,193	378,181	159,931	81	70.3
2025	370,041	370,041	370,041	370,041	137,767	507,808	320,991	181,889	4,928	63.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양평군, 안성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문경시, 영주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실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실집행부진 지자체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양평군	6,787	2,873	9,660	-	9,660	-	0.0
안성시	9,905	1,606	11,511	-	11,511	-	0.0
삼척시	1,519	-	1,519	-	1,519	-	0.0
평창군	1,105	-	1,105	-	1,105	-	0.0
영동군	981	-	981	-	981	-	0.0
천안시	3,735	-	3,735	-	3,735	-	0.0
울릉군	904	-	904	-	904	-	0.0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거창군	296	-	296	-	296	-	0.0
보령시	1,824	1,102	2,926	3	2,120	803	0.1
삼척시	2,939	-	2,939	10	2,929	-	0.3
화천군	2,000	1,866	3,866	15	3,851	-	0.4
양양군	972	340	1,312	33	1,279	-	2.5
문경시	4,387	1,216	5,603	301	5,302	-	5.4
영주시	3,536	672	4,208	267	3,941	-	6.3
영광군	3,404	379	3,783	316	3,467	-	8.4
당진시	2,143	205	2,348	205	2,143	-	8.7
군위군	6,595	1,621	8,216	793	7,420	3	9.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회 시정요구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 임의 추진 문제(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총 4차례의 내역변경을 통해 동절기바우처 예산을 조정하여 등유·LPG, 하절기바우처, 연탄쿠폰 등으로 조정 집행하였다.

[2024 회계연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변경 (2024.8.21.)	동절기바우처	19,500	하절기바우처	역대급 폭염 발생으로 하절기 단가 추가 인상 결정('24.8)에 따른 예산 조정
내역변경 (2025.11.6.)	동절기바우처	2,238	연탄쿠폰	연탄쿠폰 지원단가 인상 결정('24.8)에 따른 예산 조정
내역변경 (2025.1.5.)	동절기바우처	86,016	등유·LPG 구입지원	에너지위기 장기화로 등유·LPG 지원 사업 연장 실시('24.1)에 따른 예산조정
내역변경 (2025.1.5.)	동절기바우처	2,591	사업운영비	등유·LPG 지원사업 연장 시행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 반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는 2023년 동절기바우처 단가 인상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고, 2024년 상반기부터 과다편성분 1,103억 4,500만원을 등유·LPG, 하절기바우처, 연탄쿠폰으로 조정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벗어나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내역사업간 조정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결산 지적사항과 같이 연중 신규 내역사업 신설을 임의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향후 취약 계층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 필요 시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추진 예정이라고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계 정확성 제고 등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예산편성 당시와 달리 세 차례의 내역변경을 통해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2025회계연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변경 (2025.7.30.)	동절기바우처	1,261	사업운영비	바우처 미사용 가구 등에 효과적으로 바우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등 수급자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사용지원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조정
내역변경 (2025.10.21.)	동절기바우처	526	사업운영비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9.15)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조정
내역변경 (2025.12.23.)	동절기바우처	901	사업운영비	대통령 지시사항(12.20) 및 경제관계장관회의(12.24)에 따라 도시가스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에너지공급사 요구할인이 없는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추진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카드 발급, 홍보추진 등을 위해 조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먼저, 2025년 7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절기바우처 예산 12억 6,1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내역변경하였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찾아가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다음으로 2025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및 홍보 추진을 위해 동절기바우처 5억 2,6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내역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시가스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에너지공급사 요금할인이 없는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을 위한 카드발급, 홍보추진 등을 위해 동절기바우처 9억 1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내역변경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을 위한 단가상승은 예상 불용액 44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등유·LPG 바우처 단가를 14.7만원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등유·LPG의 열량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40% 가량 높은 점¹⁾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내역사업 동절기바우처는 편성 당시 4,103억 9,800만원에서 4,077만원 1,000만원으로 26억 8,800만원 감소되어 집행되었으며, 사업운영비는 편성 당시 18억 7,200만원에서 45억 6,000만원으로 26억 8,800만원 증액되어 집행되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내역 사업명	편성내역	집행내역
하절기 바우처	○ 69,271백만원 (130.7만 가구 × 5.3만원)	○ 69,271백만원 (130.7만 가구 × 5.3만원)
동절기 바우처	○ 410,398백만원 (130.7만 가구 × 31.4만원)	○ 407,710백만원 (129.9만 가구 × 31.4만원)
사업 운영비	○ 1,872백만원 - 시스템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운영(502.7백만원), 에너지복지홍보(448백만원), 패널조사(131.7백만원), 전달체계구축(34.6백만원), 협력기관지원(50백만원)	○ 4,560백만원 - 시스템고도화(1,429.4백만원), 콜센터운영(1,109.4백만원), 에너지복지홍보(1,569.5백만원), 패널조사(132.2백만원), 전달체계구축(99.5백만원), 협력기관지원(219.5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사업집행 방식의 변경은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23.83원/MJ, LPG용기 요금 2,445원/kg, 실내등유 1,334.92원/L를 열량단가로 환산 시 1:1.85:1.39이며, 등유·LPG를 통합으로 가중평균 시 1:1.4수준

(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과다 문제(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2022년 2조 8,8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으며, 그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총 3조 7,6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다.

국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기금의 법적 취지와 수익성 제고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매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증가시킨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적정 규모를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예산 편성시 방폐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손익, 공자기금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재부와 협의 끝에 공자기금 예탁 비중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추후에도 적정 수준의 예탁금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예탁 비중은 2024년 43.3%에서 2025년 40.8%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금액과 예탁 비중 모두 증가 예정이므로 예탁 과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매년 증가해 왔고, 2022년~2024년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 대비 예탁 규모를 증액해 왔다.

구체적으로, 동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2021년 2조 5,000억원에서 2025년 4조 163억원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였고,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체 운용액(9조 8,331억 1,200만원)의 40.8% 수준이다.

[2021~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집행액	기금운용계획 변경일자
	당초(A)	수정(B)	증감(B-A)		
2021	2,500,000	2,500,000	-	2,500,000	-
2022	2,500,000	2,880,000	380,000	2,880,000	2022.5.12.
2023	3,300,000	3,367,000	67,000	3,367,000	2023.11.29
2024	3,760,000	3,888,700	128,700	3,888,700	2024.12.9.
2025	4,016,300	4,016,300	-	4,016,30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확대는 기금의 성격, 수익률,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금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 「국가재정법」 제13조2)는 정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9개 특별회계·기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2)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하는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회계-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9개 특별회계·기금에 포함된다.

동 조항에서 회계-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해당 특별회계·기금이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고, 급작스런 대규모 지출 발생, 중장기적 지출규모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경우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출입 제외 대상으로 2008년에 추가되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상기 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공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경우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탁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중 대부분을 연기금투자펀드와 기타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운용하고 있다. 2025년 동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9.61%, 2024년 8.81%, 2025년 10.87%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2023~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펀드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3	4,405,977	3,862,596 (9.61)	217,667 (5.21)	1,442,256 (9.98)	2,202,372 (9.72)
2024	4,853,599	4,328,992 (8.81)	1,000 (0.08)	787,855 (6.68)	3,540,137 (9.29)
2025	5,610,923	5,303,680 (10.87)	-	200,419 (2.58)	5,103,261 (11.2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율은 예탁 개월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3.205%~3.975% 사이에서 결정되었고, 2024년 이자율은 2.530~3.505%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2025년 이자율은 2.683~2.975%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기후 에너지환경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연기금투자펀 등을 통해 운용하였다면 약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기회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공자기금 예탁규모	공자기금 예탁이자 수입액(A)	여유자금으로 운용 가정 시 수익(B) (수익률 10.87% 가정)	차액 (B-A)
2025	4,016,300	108,191	436,572	328,381

셋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에 대해서는 2024 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에서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 축소 및 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2025년 예탁 비중을 축소하여 편성하였고, 추후에도 적정 수준의 예탁금 편성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에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예탁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그 규모 자체는 증가했으며, 2026년에도 전년 대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증가하여 2025년 대비 5,000억원이 증가하였다. 2026년 확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규모는 11조 131억 3,700만원이고, 이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비중은 41.0%인데, 일반적으로 결산 규모는 당초 기금계획 규모에 비해 작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2026년 예탁비중은 2025년 대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1~202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기금규모(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계획액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집행액(B)	예탁비중 (B/A)
		당초	수정		
2021	6,412,005	2,500,000	2,500,000	2,500,000	39.0
2022	7,030,931	2,500,000	2,880,000	2,880,000	41.0
2023	7,958,269	3,300,000	3,367,000	3,367,000	42.3
2024	8,970,616	3,760,000	3,888,700	3,888,700	43.3
2025	9,833,112	4,016,300	4,016,300	4,016,300	40.8
2026	11,013,137 ¹⁾	4,516,300	-	-	-

주: 1) 2026년 기금규모는 확정 규모가 아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편성된 규모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 기금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제외대상이라는 점, 공적자금 예탁으로 인해 수익률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 2025년 결산 기준 예탁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예탁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4)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고용노동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은 예산 288억 3,200만원 중 135억 400만원(46.8%)만 집행되었고, 특히 외국인력특화훈련은 2024년 목표인원 4,000명 중 실제 지원인원은 755명(18.9%)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외국인력 특화훈련의 목표 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집행 실적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을 방지할 것과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정교육 이후 외국인력 특화훈련까지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연계를 추진한 사업주에

게 고용허가 심사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주말 훈련 시 수당을 지원하고, 한국어(문화)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50%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2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 보고 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외국인력특화훈련의 경우 목표인원 대비 19.4%만 훈련에 참여하는 등 집행 실적 저조가 반복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업종 및 도입인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는 목표인원을 6,000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력 특화훈련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면 1,162명으로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2024년 목표인원 4,000명 대비 실제 집행인원이 755명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2025년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목표인원		지원인원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	외국인력	일반	외국인력		
2022	10,000		4,662	-	36,040	15,800 (43.8)
2023	10,000		2,927	129	36,040	10,853 (37.6)
2024	4,000	4,000	2,879	755	28,832	13,504 (46.8)
2025	2,000	6,000	5,624	1,162	28,832	24,703 (85.7)

자료: 고용노동부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³⁾, E-8(계절근로)⁴⁾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활용 증가로 E-9 비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제 도입인원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2024년 78,645명, 2025년 54,615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별도의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동 사업의 집행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5년 업종별 E-9 도입인원 한도 및 발급인원]

(단위: 명)

구 분		총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²⁾
2022	한도 ¹⁾	69,000	52,632	-	9,684	4,940	1,561	183	-
	발급인원	66,987	50,988	-	9,482	4,874	1,541	102	-
2023	한도	120,000	89,470	2,439	12,950	8,568	3,699	1,870	1,004
	발급인원	114,338	88,657	1,944	11,966	8,481	2,820	470	-
2024	한도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발급인원	78,645	60,091	1,509	8,753	6,227	1,283	782	-
2025	한도	98,000	72,000	2,500	10,000	8,500	2,000	3,000	32,000
	발급인원	54,615	38,083	901	8,181	5,890	1,038	522	-

주: 1) 최초배정분에서 탄력배정분 등을 반영한 조정쿼터 기준

2) 탄력배정분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됨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한도 변화 추이를 감안 외국인력 특화 훈련 수요를 재점검하여 목표인원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훈련 참여 대상 확대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분야(예: IT·엔지니어링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주로 발급

4) 농·어업 등 계절성 업종에서 단기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로 발급

(5)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대지급금 지급액이 2022년 5,368억 6,400만원에서 2024년 7,242억 7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회수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회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라 회수율 상향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직상수급인 변제책임 부과, 고액채권집중회수팀 신설 운영, 변제금 미납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등을 통해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매년 감소하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지급금의 회수율은 답보 상태에 있다.

2023년도부터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액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⁵⁾이다.

5)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8042호, 2021.10.14. 시행)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임금체불액 (A)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2,067,896
대지급금 지급액(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도산 대지급금	168,789 (36.7)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54,828 (7.6)	69,274 (10.1)
간이 대지급금	291,090 (63.3)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669,379 (92.4)	615,237 (89.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4	2024	2025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사업비 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대지급금 지급 ¹⁾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688,519
수지차(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공자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주: 1) 이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비 지출액으로서, 실제 대지급금 지급액과 채권관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1. 결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보수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 임금 지급에서 최종 6개월 임금 지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기금의 지출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지급금 규모가 지금과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지급금 회수율을 지표는 유의미한 개선이 없다. 특히 최근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체불액 규모의 증가 등으로 간이대지급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임금 관련 회수율]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지급금 회수율	32.8	32.2	31.9	30.9	30.0	29.7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2	39.8	40.7	41.1	41.2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2.8	14.6	16.0	16.4	17.0	18.1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지출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회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향후엔 대지급금 사업 자체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바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관측장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기상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수는 1~2대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장 건수는 2023년 156건, 2024년 59건 증가하여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4년 640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한 해 동안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가 283대에 불과하고, 5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6대, 6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4대로 고장 발생 후 복구한 장비도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기상청이 관측장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한바 있다.

기상청은 사전 예방정비 등을 통해 장애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고장 방지를 위해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노후장비를 적시에 교체하는 등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2025년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건수를 확인해보면 총 515건에 이르고 있어 고장건수가 상당하고, 평균복구시간도 28시간 55분이 소요되어 고장 발생 시 일별 예보(24시간)를 넘는 시간 동안 정확한 기상 값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지점(측정소)별 장애건수]

(단위: 개소, 건)

연도	지점 수	전년도 대비 지점수 증가	장애건수	전년도 대비 장애 증감건수	평균 복구 시간
2022	637	-	385	-	34시간 7분
2023	639	2	541	156	35시간 25분
2024	640	1	600	59	33시간 40분
2025	651	11	515	△85	28시간 55분

자료: 기상청

또한 2025년 651개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1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장비는 354개에 불과하고, 4건 이상 장애가 발생한 장비가 23개로 복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장비의 수도 상당한 편이다.

[2025년 지상기상관측 지점별 장애건수]

구분	장애건수							합계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지점 수	354	173	69	32	14	4	5	651

자료: 기상청

고장이 발생하고 24시간 이상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인근의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충적인 자료에 그치는바 기상 관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잦은 고장 문제 및 고장 발생 시 빠르게 해당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117건으로 시정 5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92건이며, 이 중 6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86건이며, 조치중 31건으로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5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5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 조치중 4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장기 공실 문제 미해소' 등 2건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	-	3	20	84	(3)	104	75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2	3	4	(2)	7	6	1
새만금개발청	-	-	-	3	4	(1)	6	5	1
합계	-	-	5	26	92	(6)	117	86	3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5	1	4
합계	5	1	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장기 공실 문제 미해소(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4년말 기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따른 공급량은 181,938호이고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재고는 5,154호로 전체재고 대비 2.8% 정도로 나타난다. 이처럼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될 경우, 임대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기본적인 관리비·유지보수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국회는 다가구매입임대의 장기공실 물량 매각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장기공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한 계획적인 매입을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유형별 수요와 공급현황, 공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따른 장기미임대 물량 및 전체 재고량 대비 비율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장기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따른 2025년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 방식의 경우 1,959호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졌고, 신축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약정매입 방식의 경우 48,771호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6,969호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2025년말 기준 매입임대 재고는 19만 3,940호로 2024년말 18만 1,938호 대비 6.6% 정도 증가하였으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물량은 같은 기간 5,154호 대비 20% 증가한 6,186호로 전체 재고 대비 비율이 2.8%에서 4.7%로 2.1%p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를 제외하면 서울과 인천의 경우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장기미임대 비율은 감소하여 공실 문제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공급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임대 비율이 증가하여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비를 투입하여 확보한 임대주택이 공실로 남는 경우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임대료 수입이 상실되는 반면 공공이 부담하는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임대 상태에 있는 매입주택 재고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민자사업자와의 분쟁 방지방안 마련 필요 등 (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5년도에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 삼성역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164억원만 편성하였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액을 감액 지급할 경우 추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종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액을 편성하여 보상지연에 따른 이자 및 법적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2026년 예산에는 GTX-A 손실보전금(순운영이익 감소분)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된 금액(약 750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GTX-A 민자사업자에게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추정 손실보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어 GTX-A 전구간 개통 이후 손실보전 규모가 재산정·확정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순운영이익 감소분은 실시협약 상 순운영이익에서 실제 순운영이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실제 순운영이익 감소분은 GTX-A 전 구간을 완전개통한 이후 실제 이용실적에 기초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재산정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현재는 추정치에 기초하여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2025년 기준 추정 순운영이익 감소분은 1,637억 1,000만원인데, 국토교통부는 이 중 43.8%에 해당하는 717억 6,1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지급금은 추정 순운영이익 감소분 대비 91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GTX-A 전 구간 개통 이후 재산정을 거쳐 순운영이익 감소분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에도 추정 순운영이익 감소분의 64.0%에 불과한 750억 5,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 불확실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정 순운영이익을 전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의 실제 이용량을 살펴보면, 2026년 4월 5주차 평일기준 69,168명/일로 예측수요(50,037명/일) 대비 138.2%에 달하는 높은 이용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확정될 순운영이익 감소분은 현재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수준에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추정 손실보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어 GTX-A 전구간 개통 이후 손실보전 규모가 재산정·확정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과 지연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손실보전금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은 총 59건으로 시정 5건, 주의 5건, 제도개선 50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44건이며, 조치중 15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 필요’ 등 2건이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성평등가족부	-	-	5	5	50	(1)	59	44	15
합계	-	-	5	5	50	(1)	59	44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 필요(성평등가족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84.7% 수준이며 대기가구는 9,519가구이고, 평균 대기일수가 32.8일에 달하며,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시간당 돌봄수당은 최저임금의 100.1%~105.6% 수준이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인원 대비 실제 증원 비율이 21.7%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주말 등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아이돌보미 수당 현실화 등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공급확대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 '26년 예산 반영¹⁾하였으며, 심야·긴급 돌봄 확대를 위한 야간특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25년 9월~) 및 26년 예산 반영²⁾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와 문제점

성평등가족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아이돌봄지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아이돌봄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돌봄수당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가구 수와 대기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간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돌봄수당의 서비스 유형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실집행률 101.3%에서 2024년 71.6%까지 하락하였으며, 2025년에는 실집행률이 87.6%로 전년 대비 약 16%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계획 대비 적은 일부 서비스 유형이 있고, 아이돌봄사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25년 10,590원 → '26년 11,120원), 영아돌봄수당 인상('25 1,500원/시간 → '26년 2,000원/시간), 유아돌봄수당 신설(1,000원/시간)

2) 돌보미 대상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지원 및 '가'형 가구 대상 야간 특화 긴급돌봄서비스 할증요금 지원 신설

[2021~2025년 돌봄수당 사업 서비스 유형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1	돌봄수당	180,158	185,063	182,451	101.3
	영아 종일제	23,572	24,140	24,515	104.0
	시간제	155,374	159,711	157,936	100.9
	취약가정 추가지원	1,212	1,212		
2022	돌봄수당	202,031	204,912	195,935	97.0
	영아 종일제	24,948	25,304	21,719	87.1
	시간제	174,479	177,004	174,216	98.4
	취약가정 추가지원	2,604	2,604		
2023	돌봄수당	281,874	281,874	231,883	82.3
	영아 종일제	23,059	23,059	15,619	67.7
	시간제	255,677	255,677	216,264	83.6
	취약가정 추가지원	3,137	3,137		
2024	돌봄수당	384,222	384,117	275,212	71.6
	영아 종일제	28,033	27,928	12,982	46.3
	시간제	352,138	352,138	262,230	73.6
	취약가정 추가지원	4,051	4,051		
2025	돌봄수당	384,637	384,356	337,123	87.6
	영아 종일제	15,677	15,396	7,540	48.1
	시간제	361,806	361,806	311,623	85.1
	취약가정 추가지원	4,229	4,229		
	영아돌봄 수당	2,925	2,925	17,960	614.0

주: 취약가정 추가지원의 경우 이용서비스의 예산집행액에 포함되어 별도 산출이 불가능(모두 시간제 집행액으로 편입)

자료: 성평등가족부

실제로 최근 5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2025년 86.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1년보다 하락한 수준이다. 또한 대기가구는 2023년 13,031가구에서 2024년 9,519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 11,645가구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평균 대기일수도 2021년 19일에서 2025년 39.4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연계 및 대기 현황]

(단위: 가구, %, 일)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연계가구	연계율	대기가구	평균 대기일수
2021	78,118	71,789	91.9	6,809	19.0
2022	86,465	78,212	90.5	14,745	27.8
2023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	139,508	118,126	84.7	9,519	32.8
2025	183,794	159,804	86.9	11,645	39.4

주: 1. 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및 단기, 기관연계시스템 포함

2. 대기가구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 정기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구수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자료: 성평등가족부

시·도별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평균 대기일수는 최소 23.4일(충남) 대비 최대 60.9일(경북)로 약 37일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³⁾ 이처럼 돌봄수당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서비스 연계율이 저조하고 평균 대기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이돌봄사 활동인력이 실제 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25년 경북에서 지방비를 투입,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경북의 대기일수가 전년대비 급증 [(24년) 32일 → (25년) 60.9일]한 측면이 있다.

[2021~2025년 시·도별 아이돌봄서비스 대기현황]

(단위: 가구, 일)

지역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대기가구수	4,898	8,993	7,397	1,811	2,124
	평균 대기일수	43.9	58.1	32.3	41.7	50.2
부산	대기가구수	37	103	113	380	329
	평균 대기일수	23.9	22.5	33.0	35.4	43.9
대구	대기가구수	20	81	119	144	83
	평균 대기일수	11.3	23.9	53.5	23.7	39.2
인천	대기가구수	130	471	340	545	601
	평균 대기일수	20.8	40.0	41.2	36.8	48.0
광주	대기가구수	80	192	152	49	137
	평균 대기일수	38.5	32.5	28.2	32.2	27.6
대전	대기가구수	320	710	565	100	86
	평균 대기일수	33.5	44.4	20.4	31.8	37.6
울산	대기가구수	68	264	226	21	24
	평균 대기일수	30.1	39.4	22.2	20.7	29.2
세종	대기가구수	276	781	571	112	220
	평균 대기일수	38.1	63.1	23.2	43.7	49.3
경기	대기가구수	246	446	565	2,288	2,812
	평균 대기일수	22.3	21.8	46.9	34.3	33.8
강원	대기가구수	58	197	131	403	586
	평균 대기일수	9.3	27.0	27.9	45.7	38.6
충북	대기가구수	164	404	218	24	57
	평균 대기일수	19.5	24.7	15.7	26.3	28.6
충남	대기가구수	117	305	307	42	103
	평균 대기일수	12.5	20.6	35.1	12.9	23.4
전북	대기가구수	24	76	89	100	135
	평균 대기일수	6.4	17.7	34.9	24.6	28.5
전남	대기가구수	24	122	128	232	313
	평균 대기일수	8.6	22.8	26.5	33.9	38.6
경북	대기가구수	226	1,137	1,667	2,524	3,167
	평균 대기일수	9.8	20.9	38.2	32.0	60.9
경남	대기가구수	104	443	422	690	792
	평균 대기일수	13.9	15.6	39.0	30.1	26.7
제주	대기가구수	17	20	21	54	76
	평균 대기일수	15.0	39.8	46.0	33.1	26.2

자료: 성평등가족부

실제로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봄사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교육인원은 2024년을 제외하고는 예산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아이돌봄사 수 또한 매년 예산상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예산상 별도의 양성교육 목표 인원은 설정되지 않았으나, 배상보험료 등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실제 교육인원 대비 활동 아이돌봄사 증원 비율은 16.4%로 2024년(21.7%)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봄사 현황]

(단위: 명, %)

연도	양성교육인원			활동 아이돌봄사				
	예산상 목표 (A)	실제교육 인원 (B)	달성률 (B/A)	예산상 목표 (C)	실제 인원 (D)	달성률 (D/C)	전년대비 증감 (E)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 (E/B)
2020	4,500	2,403	53.4	34,500	24,469	70.9	△208	△8.7
2021	10,300	3,937	38.2	35,000	25,917	74.0	1,448	36.8
2022	5,000	3,544	70.9	33,000	26,675	80.8	758	21.4
2023	4,500	3,946	87.7	29,090	28,071	96.5	1,396	35.4
2024	6,000	8,901	148.4	34,908	29,635	84.9	1,564	21.7
2025 ¹⁾	-	12,736	-	36,000	31,718	88.1	2,083	16.4

주: 1) 2025년은 예산상 목표 인원수를 설정하지 않아, 배상보험료 예산편성 기준으로 대체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처럼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인원 및 아이돌봄사 증원 비율이 계획 대비 저조한 사유는 아이돌봄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수준 및 열악한 근로여건이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2021~2025년 최저 임금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 및 주휴수당)은 115.1~121.4% 수준이며, 2025년 이용요금은 시간당 12,180원, 그 중 주휴수당 1,590원을 제외한 돌봄수당은 10,590원으로 최저임금의 105.6% 수준이다.

[2021~2025년 최저임금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 및 주휴수당)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최저임금(A)	8,720	9,160	9,620	9,860	10,030
전년대비 증	130	440	460	240	170
돌봄수당(B)	8,730	9,170	9,630	10,110	10,590
전년대비 증	130	440	460	480	480
B/A	100.1	100.1	100.1	102.5	105.6
주휴수당(C)	1,310	1,380	1,450	1,520	1,590
이용요금(B+C)	10,040	10,550	11,080	11,630	12,180
전년대비 증	150	510	530	550	550
(B+C)/A	115.1	115.2	115.2	118.0	121.4

자료: 성평등가족부

실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봄사 활동 실태와 관련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급여 인상’이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교육 강화(16.1%) 등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성평등가족부는 민간 및 공공서비스제공기관 간 임금체계 및 처우수준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실제 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아이돌봄사 인력의 처우개선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2) 과징금 수납률 저조 문제(성평등가족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세입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523억 9,800만원 중 1,676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845억 2,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수납률은 66.4%이다.

4)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돌보미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유인 마련 및 관리 체계 구축하여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광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질적 개선 및 민간돌봄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24년에는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보호기금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되었다. 그러나 과징금 징수결정액 39억원 중 1억 8,900만 원이 수납되고 37억 1,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8%로 매우 저조하였다.

국회는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하여 압류·공매 등의 집행을 강화하고, 파산 또는 무재산이 최종 확인될 때는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채권 회수 위탁, 압류재산 공매 추진, 체납자 무재산 등의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조치결과의 문제점

성평등가족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의 과징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낮은 문제가 있다.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 과목별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과징금은 징수결정액 37억 1,2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1억 7,700만 원에 불과하여 수납률이 4.8% 수준에 그치는 등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은 과징금 징수결정액 25억 7,200만 원 전액이 미수납된 상태이다.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 과목별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과목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합 계	계	58,928	243,625	158,855	84,522	248
	기타재산이자수입	4,504	15,731	12,255	3,475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3,712	177	3,502	32
	가산금	-	69	0.1	69	-
	기타경상이전수입	54,424	224,108	146,423	77,469	216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2,922	8,914	7,089	1,825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760	126	609	25
	가산금	-	30	-	30	-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	127,975	78,122	49,852	-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	879	742	137	-
	기타경상이전수입	380	8,196	6,908	1,288	-
양성평등 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1,128	3,980	3,358	622	-
	과징금	-	380	51	321	8
	가산금	-	2	0.1	2	-
	기타경상이전수입	17,647	75,945	56,946	18,999	-
청소년 육성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454	1,958	1,066	892	-
	과징금	-	2,572	-	2,572	-
	가산금	-	37	-	37	-
	기타경상이전수입	6,397	11,992	4,446	7,330	216

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합계 /수납 완료된 세입(수입) 과목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구체적으로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과징금 미수납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7억 6,000만 원 중 6억 9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징수결정액 3억 8,0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징수결정액 25억 7,200만 원 전액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 부족 및 파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과징금 미수납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과징금 부과 사유 (세부사업명, 금액, 납부의무자)	미수납 사유
계	3,712	177	3,502	32	4.8	-	-
일반 회계	760	126	609	25	16.6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가족정책추진기반구축, 10백만원, 사 단법인서울인구포럼등(수납 1백만원)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 활동지원, 150백만원, 춘천가정폭 력성폭력상담소(불납결손 25백만 원(사유:파산)/수납 126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600 백만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채납자 재력부족, 파산 등
양성 평등 기금	380	51	321	8	13.5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284백만 원, 박00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48 백만원,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 소등(불납결손 8백만원(사유:파산), 수납 39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48백만원, 사 회복지법인필그림하우스등(수납 11백만원)	채납자 재력부족, 파산 등
청소년 육성 기금	2,572	0	2,572	0	0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834백만 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舊청소년 쉼터운영지원), 738백만원, 제주대 안교육센터	채납자 재력부족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 수단인바, 과징금 등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령의 규범력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체납 과징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현황 파악 및 분할납부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징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없으며,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총 2건이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6년 4월 말 기준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전 부처 공통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공통	2	-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5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전 부처 공통 대상 부대의견 및 조치 현황]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계별 민관협의체 및 주민간담회에서 기후부의 취·양수장 개선사업 취지 및 추진 방향 설명 - (영산강) '25.9.22, (한강) '25.10.27, (낙동강) '25.10.23(중·상류), '25.10.30(하류)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사업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및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 농어촌물포럼 및 농업인 단체 연계 홍보 - 농어촌물포럼 및 농업인 단체와 협력하여 마을 방송, 사업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농업인 대상 홍보 실시 ○ 온라인·언론 홍보 병행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누리집, 소식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이 농업용수의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임.	조치중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재정경제부) ○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 마사회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결정 취소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 검토 예정 (산업통상부) ○ 방통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승인’ 관련 1차 행정소송결과(11.28) 후 유진그룹이 항소함에 따라, 법정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 검토 추진	조치중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26.5)」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 록

[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법제사법 위원회 (29건)	법무부	치료감호자수용관리 (국립법무병원 의료 인력 충원 필요)	-	○	○
		국가배상금 지급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	-	○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	○	○
		공익신탁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	○	○
		전자공증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필요	○	-	○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 필요	○	-	○
		검사 국외훈련비 관련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	○	○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 이·전용 개선 필요	-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법령 개정 적시 반영 필요	-	○	○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
		연례적인 기타직보수 인건비 전용 지양 필요	-	○	○
	감사원	일반연구비 용역 과제 공개 확대 및 수의계약 비중 축소필요	-	○	○
		국내여비 예산의 타사업 이·전용 지양 필요	-	○	○
		재심의 처리기한 준수	-	○	○
	헌법재판소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	-	○
		본부기본경비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직책수행경비의 집행률 제고 필요)	○	-	○
		국선대리인보수등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재판활동운영지원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장기미제 사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	○
		본부기본경비 등 (발간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 완화 필요)	-	○	○
		헌법연구관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필요	○	-	○
	대법원	징계부가금 징수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	○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 필요	○	-	○
		(진술조력인제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 정비 필요	○	-	○
		법원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	○	○
		국선번호로 지급지연 예방을 위한 집행관리 체계 개선 필요	-	○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	○	○
		목적에 부합하는 복리후생비 집행 필요	-	○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공소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	○	○
정무 위원회 (27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 반복 부적정	○	○	○
		청년DB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
		연구개발적립금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	○	○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단 (지급계획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	○
		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진료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 개선)	-	○	○
		제대군인의료지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정무 위원회 (27건)		보훈기념행사 (과다한 예산 전용이나 조정 지양 필요)	-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계획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	○
		보훈정책개발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이월 방지 노력 필요)	-	○	○
		국가유공자위로격려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 주의 필요)	-	○	○
		보훈복지시설건립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	○
		보훈요양및양로지원 (보훈복지타운 시설 개선 사업 신속하게 착수 필요)	○	-	○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 과오급 연례적 발생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및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이·전용 지양 필요)	○	○	○
		지방보훈회관건립 (모니터링 강화 및 반복적인 불용 방지 방안 국회 보고 필요)	○	○	○
		88골프장 매각 방향 조속한 확정 및 수입 편성 필요	-	○	○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 및 이행평가 결과 개선 방안 필요	○	-	○
		자율규제 제도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	-	○	○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국외여비 집행 재발방지 필요	○	-	○
		한국소비자원 출연 (연례적인 수입결손 해소 필요)	○	○	○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	○	○	○
		취소 결정된 과징금에 대한 조속한 환급절차 완료 필요	-	○	○
		변호사 선임료의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금융위원회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일반회계 편입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	○	○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하게 법리 검토 선행 필요	-	○	○
		행정심판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활성화 필요	-	○	○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21건)	재정경제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적극적 공개 필요	-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필요	-	○	○
		조세지출 관리제도 강화 필요	-	○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	○	-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구체화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변경 필요	-	○	○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
		국유재산관리 기금의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절	○	-	○
	기획예산처	세수 결손 대응 부적절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세입예산 조정 없이 일방적 불용, 내부거래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	○	○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및 국회보고 필요	-	○	○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비수도권 지역에 위탁인력 적극 배치 필요)	-	○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	○	○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제고 필요)	-	○	○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	○	-	○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	○	○
		수출입화물검사지원 (검사비용 지급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필요)	○	○	-
		공항만감시지원 (드론 운영 방안 개선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조달청	시설계약 사업수입 미수납 및 예산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	-	○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	-	○
	통계청	국가통계 품질 제고 필요	-	○	○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및 예산 전용절차 준수 필요	○	-	○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
교육 위원회 (5건)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 과소편성 후 증액변경 반복 시정 필요	-	○	○
		보통교부금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지급 필요)	○	○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
		소속기관 경비의 본부 전용 문제 개선 필요	-	○	○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9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사업(법령 및 결산시정요구 사항을 준수한 인건비 집행 필요)	-	○	○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	○	○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공모 필요	-	○	○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EBS의 UHD 방송 장기 미송출 문제 해결 필요)	-	○	○
		연가보상비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부적절	-	○	○
		아리랑 국제방송지원, 국악방송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	○	○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
		방심위원장 해외 출장 관련 변상 필요	-	○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개선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외교통일 위원회 (8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반복적인 집행을 저조에 따른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	○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	○	○
		국내통일기반조성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
		DMZ 평화적 이용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	○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	○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 리 필요)	-	○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	-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	○	○
국방위원회 (14건)	국방부	미수납 채권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
		의무시설 개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	○	○
		훈련장 시설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	○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적정편성 및 연 례적 조정 집행 지양 필요	○	-	○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통한 운용률 제고 필요	○	○	○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	○	○
		군무원 인건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	○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추계 정확도 제고 및 성과목표치 개선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 감축 필요	-	○	○
		병역의무자지원사업 불용 최소화 필요	-	○	○
	방위사업청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과도한 예산 이·전용 지양 필요)	-	○	○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신뢰도 시험 일정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	-
		보라매(R&D) (공동참여국의 분담금 축소 등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
행정안전 위원회 (13건)	행정안전부	세수결손 시 지방교부세 미교부 부적정	-	○	○
		제주4·3피해보상 (보상금 심의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	○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	○
	경찰청	과태료 수납률 제고 필요	○	○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화성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	○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집행 필요	○	-	○
	소방청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필요)	-	○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건립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	○
		실화재훈련시설구축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필요)	○	○	○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지양)	-	○	○
		대여학자금 수탁금잉여금의 신속한 반환 및 이자수입 반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근거 마련 필요	-	○	○
		휴직자 추계 등 인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7건)	문화체육 관광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예산 불용 주의 및 실행행률 개선 필요)	○	○	○
		K-콘텐츠 펀드 출자 (모태펀드 자펀드 결성 지연 개선 필요)	○	○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호기금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	-	○	○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긴급보수사업비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연례적인 이월 방지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연례적인 이월 방지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	○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참여자 정규직 전환율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33건)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	-	○	○
		공익기능증진직불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연례적인 사업실적 부진 개선 필요)	-	○	○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집행가능한 예산 편성 필요)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등 필요)	-	○	○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실행행률 제 고 필요)	○	-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33건)		법정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	○
		임대형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보조금 관리 강화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	○	○	○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부채액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필요	-	○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
	해양수산부	해양정원 조성사업 (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지연 해소 등 사업기간 내 완료 필요)	-	○	○
		연근해어선감적 (감척사업 효과 상쇄 요인 관리 필요)	-	○	○
		수산공익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사업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추진방안 마련 필요)	-	○	○
		묘도 향만재개발 사업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 관리 필요)	-	○	○
		어촌뉴딜300 사업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	○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실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	○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 지연문제 개선 필요	○	○	○
	산림청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필요	-	○	○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	○	○
		산림과학연구(R&D)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	○	○
		임도시설의 과도한 수의계약 방식 개선 필요	-	○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자체수입 예산의 적정성 확보)	○	○	○
		녹색자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	○	○
		국산산림헬기 도입의 적극 추진 필요	○	○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연례적 미수납 문제 해결 필요	-	○	○
	해양경찰청	지방관서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	○	○
		공공요금및제세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 등 국회시정요구사항 준수방안 강구 필요	○	○	○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15건)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연말 계약 과다 체결 방지 및 정책연구비 이월·불용률 개선 필요)	-	○	○
		대한석탄공사 채무조정 및 조속한 대체산업 추진 등 관리·감독 필요	-	○	○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국회 예산 심의 취지를 반영하여 집행 필요)	-	○	○
	지식재산처	과태료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	-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중부권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지연 방지 및 계획적 예산 집행 필요)	-	○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의 담보가치 제고 및 활용강화 필요)	○	○	○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인력충원 노력 필요	-	○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책패키지 간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	○	○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 사업방식 재설계 필요)	○	-	○
		지식산업센터 실집행부진 개선 및 적정 수준 예산편성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지역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적정 수지차보전 규모 산출 노력 필요	○	-	○
		K-바이오랩허브 구축(R&D) (실집행률 제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	○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조금 집행잔액의 적기 국고반납 필요)	○	-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
보건복지 위원회 (36건)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관리 (수요를 고려하여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예산 지원 확대 필요)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 필요 (장사시설 설치)	○	○	○
		집행실적 개선 및 화장시설 확충 필요	-	○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	○	○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청구에 대한 대책 마 련 필요	○	○	○
		요보호아동자립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	○	○
		요보호아동자립지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집행실적 개선 필요)	-	○	○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 교사 처우 개선 방안 필요)	○	-	○
		모자보건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	○	○
		생계급여 예산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	○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마련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보건복지 위원회 (36건)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적정 인력 미확보로 인한 실집행 불용 방지 대책 필요)	-	○	○
		장애인의료비지원 (적정 수준 예산 편성 및 미지급금 해소 필요)	-	○	○
		장애인활동지원 (미이용자 증가 추세에 대응 필요)	○	○	○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조정을 통한 가산급여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	○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수요 추계 방식 개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실집행 저조 및 장기 미개소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	○	○	○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사 지연 방안 필요	-	○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수검률·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 확대 필요	-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인력 처우 개선 필요)	-	○	○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활성화 방안 필요	-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별 편중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의 신속한 완료 필요	○	○	○
		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 관리 및 집행 강화 필요	-	○	○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	○	-	○
		한국형상병수당시범사업 (집행 부진 해소 및 참여율 제고 필요)	○	○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 방안 필요	○	○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대책 마련 필요	-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조직 운영 내실화 필요	○	○	○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활용 부적절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식품의약품 안전처	「담배유통해성관리법」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 필요	-	○	○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미지급금 발생 조치 필요 등	-	○	○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23건)	기후에너지 환경부	법정부담금 수납률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	○
		야생동물보호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 행관리 필요	○	-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	○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추가적인 집행 지연 방지 필요	○	○	○
		하수관로정비 (실집행 부진 해소 필요)	-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실집행 부진 해소 필요)	-	○	○
		무공해차보급사업 (수요 기반 보급 목표 설정 및 집행가능한 수 준의 예산 편성 필요)	-	○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지자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 필요)	○	○	○
	기상청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 등을 고려한 출 자금 예산 편성 필요	-	○	○
		기상용슈퍼컴퓨팅(정보화) (전기요금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예산조정 개 선 필요)	-	○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방안 마련 등	○	○	○
		ODA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 과정 관 리감독 필요	-	○	○
		국민취업지원제도(예산추계 정확도 제고 및 예산산출 방식 개선 필요)	○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고용유지율 등 충분한 검 토 선행 후 예산 편성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권리구제지원팀 전문직 인력 충원 방안 마련	-	○	○
		고용보험기금 적립 관련 법령 위반 개선 필요	-	○	○
		장애인고용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
		임금채권보장 기금 일반회계 부담금 증액 및 사업주 부담금비율 상향 필요	-	○	○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상향 검토 필요	○	○	○
		산재신청 후 처리기간 단축계획의 철저한 이행 필요	○	-	○
		모성보호 육아지원예산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	○	○
		구상채권 회수 노력 필요	○	-	○
국토교통위원회 (10건)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 (과도한 이·전용의 관행 주의 필요)	-	○	○
		일반국도 건설 (과도한 이·전용의 관행 주의 필요)	-	○	○
		위험도로 개선 (이월 최소화 필요)	○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법정 처리기한 준수 필요)	○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의 실질행 소요를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	○
		정책연구비 연례적인 이월 방지 필요	○	○	○
		다가구매입임대 (공실임대 개선 필요)	○	○	○
		통합공공임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연례적 이·전용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성평등가족 위원회 (17건)	성평등 가족부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활성화 필요	-	○	○
		국립여성사박물관건립사업 (사업관리 강화 필요)	○	○	○
		가족역량강화지원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필요)	-	○	○
		가족역량강화지원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집행률 제고 필요)	○	○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복지급여 수요 추계의 정밀화, 부정수급 방 지 및 환수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실집행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타사업 이관 필요)	-	○	○
		아이돌봄지원 (광역지원센터 업무 범위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모색 필요)	-	○	○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아이돌봄지원 (상이한 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및 자의적 예 산 조정 집행 금지 필요)	-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처우 개 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필요)	-	○	○
		지역피해자권의 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22	2023	20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실집행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	○
		국립청소년진료직업 (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부진 해소 방안 필요)	○	○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산분석시리즈 VIII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SN 2983-287X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1-001361-10

ISSN 2983-287X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